

2024. 6. 22. 시행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기출해설특강

24년 6월 22일(토) 법원직·등기직 시험 해설 강의 일정

- 강의실 : 이데아빌딩 301호 -

과 목	일 정
국사(정우교)	6/24(월) 09시 - 11시
형법(박지용)	6/24(월) 11시 - 13시
민법(이준현)	6/24(월) 14시 - 16시
형사소송법(이준현)	6/24(월) 16시 - 18시
영어(이아람)	6/25(화) 11시 - 13시
부동산등기법(김기찬)	6/25(화) 14시 - 16시
민사소송법(이영민)	6/25(화) 16시 - 18시
국어(신동수)	6/26(수) 09시 - 11시
헌법(정인홍)	6/26(수) 11시 - 13시
상법(이상수)	6/26(수) 14시 - 16시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이준현 채용팀

All Pass 면접반

강의 기간	7월 13일(토) 14시 <면접시험 전일까지>
강의 대상	법원직·등기직 필기합격자!!
강의 장소	박문각 이데아관 3층(강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강의 수강료	정상가 : 10만원 (교재비 포함)
강의 내용	① 28년의 노하우, 법원·등기직 면접에 맞춘 맞춤 면접 ② 실제 면접질문 내용을 토대로 한 개별면접 교육 ③ 스터디 그룹 편성, 조별 면접 교육 ④ 인성검사 대비 테스트

합격예측 풀서비스

일정	6월 22일(토) 18시 이후(가답안 발표 후)
대상	법원직·등기직 필기시험 응시자
홈페이지 URL	박문각 법원검찰 https://www.pmg.co.kr/user/pao/event/event_240603.asp
이벤트	에어팟 프로(추첨 1명) + 기타
* 수험생 본인 개별 성적 확인, 성적분석 통계 데이터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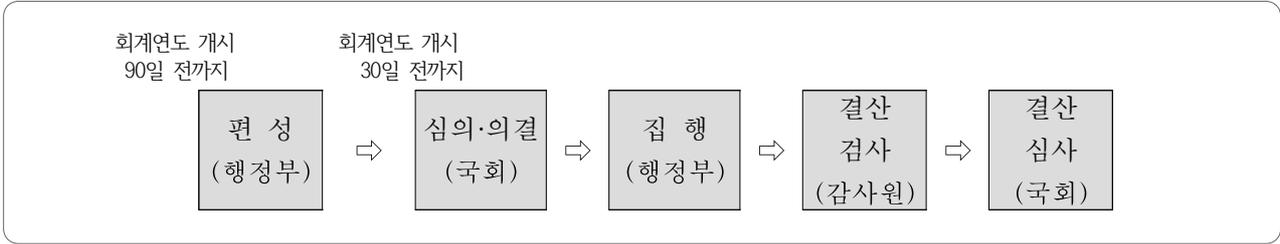
헌 법

정인홍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국회의 정족수

1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비공개발의(국회법 제75조 제1항) · 일반의안의 발의(국회법 제79조 제1항)
2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국회법 제121조 제1항) · 징계요구(국회법 제156조 제3항) · 긴급현안질문요구(국회법 제122조의 3) · 의사일정의 변경발의(국회법 제77조) · 교섭단체의 성립(국회법 제33조)
3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심사의 청구(국회법 제138조) · 일반의안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7조 제1항)
5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단서)
재적과반수, 최고득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헌법 제67조 제2항), 의장·부의장결선투표,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적1/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개회(국회법 제54조) · 본회의 개의(국회법 제73조)
재적1/4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회 소집요구(헌법 제47조 제1항) · 전원위원회 요구(국회법 제63조의 2) · 위원회의 개회 요구(재적위원의 1/4 이상) (국회법 제52조) · 휴회 중의 본회의 재개요구(국회법 제8조 제2항) ·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국회법 제28조) · 국정조사 발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재적1/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건의 발의(헌법 제63조 제2항)· 일반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무제한 토론의 실시(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출석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회의 의결(헌법 제50조 제1항)
재적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부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제1항) · 해임건의(헌법 제63조 제2항)· 계엄해제 요구(헌법 제77조 제5항) ·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 · 일반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 결의(헌법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2/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제의결(헌법 제53조 제4항) · 번안(국회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재적2/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 자격심사(무자격결정)(국회법 제142조 제3항) ·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재적3/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제한 토론의 종결(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2. 예산과 결산 절차



3. 국가기관의 임기 비교 정리

- (1) 국회
 - ① 국회의원 : 4년
 - ② 국회의장, 부의장 : 2년
 - ③ 상임위원 : 2년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 : 1년
- (2) 행정부
 - ① 대통령 : 5년(중임 불가능)
 - ② 감사원장, 감사위원 :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 6년
- (3) 법원
 - ① 대법원장 : 6년(중임 불가능)
 - ② 대법관 : 6년(연임 가능)
 - ③ 판사 : 10년(연임 가능)
- (4) 헌법재판소
 - ① 헌법재판소장 : 규정 없음
 - ② 헌법재판관 : 6년(연임 가능)

4. 국가기관의 권한대행자 비교 정리

- (1) 국회의장
 - ①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 → 임시의장
 - ② 국회의원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 : 사무총장
 - ③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최다선 의원 → 연장자
- (2) 행정부
 - ① 대통령 :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 ②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 →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
 - ③ 감사원장 : 최장 기간 재직 한 감사위원 → 연장자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상임위원
- (3) 대법원장 : 선임대법관
- (4)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 ①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 ② 권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5. 의결정족수 비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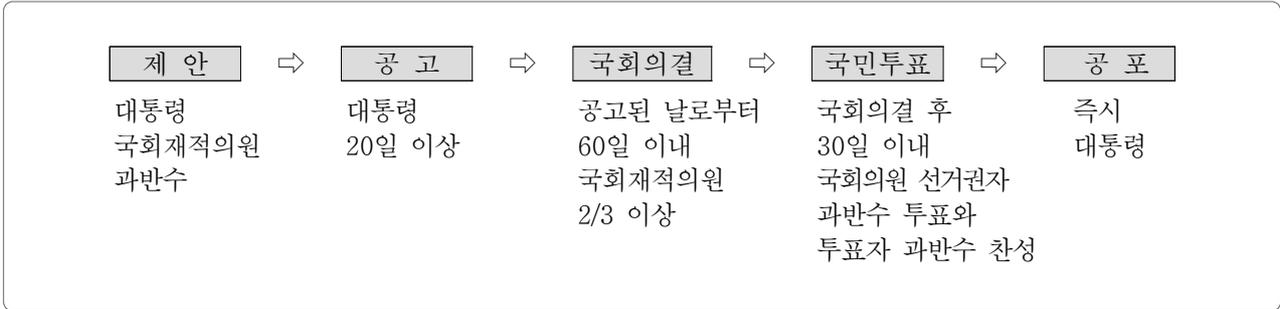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부결
국무회의	재적과반수출석, 출석2/3이상찬성	규정 없음
감사원	재적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위원장이 정한다.
대법관회의	재적2/3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의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6. 헌법재판 비교

위헌법률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탄핵심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7. 헌법 개정 절차



8.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절차

- 제소기간의 기산점 : 선거소송은 선거일, 당선소송은 당선인결정일

대통령선거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국회의원선거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시도지사 선거	---->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청장선거	---> 14일 이내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의원선거	---> 14일 이내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제소

9. 한일어업협정(현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출지문 정리

- 1.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옳은 지문(2021년 경찰 승진)(2018 국회직 8급)(2024년 행정고시)
-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옳은 지문(2021 행시)(2021년 지방직 7급)(2022 법무사)(2022 변시)
- 3.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옳은 지문(2020 행시)
- 4.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옳은 지문(2022년 변시)
- 5.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지문(2022년 경찰승진)
- 6.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옳은 지문(2022년 경찰승진)
- 7.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옳은 지문(2020 행시)
- 8.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 틀린 지문(2019년 하반기 경찰경력채용)
- 9.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틀린 지문(2023년 경찰 간부)

- 1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옳은 지문(2023 법원행시)

10.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1)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

병역종류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에 다른 병역의 종류나 내용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심과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완전·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대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기출지문 정리

- 1.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틀린 지문(2019 국회직 9급)
- 2.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대체복무제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 틀린 지문(2019 법원행시)
- 3.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 옳은 지문(2019년 법원직)
- 4.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이다. - 옳은 지문(2021 법무사)
- 5. 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틀린 지문(2019년 법원직)
- 6.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옳은 지문(2019년 법원직)

- 7.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옴은 지문(2019년 법원직)
- 8.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틀린 지문(2021 법원직)
- 9.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범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옴은 지문(2021 법원직)
- 10.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 옴은 지문(2021 법원직)
- 1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구「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틀린 지문(2020년 지방직 7급)
- 12.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기근구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옴은 지문(2021년 경찰경력채용)
-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옴은 지문(2021년 경찰 승진)
- 14.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옴은 지문(2021년 경찰 승진)
- 15.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다. - 옴은 지문(2023 법원행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옴은 지문(2022 법원직)
- 16.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틀린 지문(2023 경찰1차)(2024년 법원행시)
- 17.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어느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 옴은 지문(2024년 경찰승진)
- 18.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 틀린 지문(2023년 경찰 간부)
- 19.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기근구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틀린 지문(2023년 경찰 간부)
- 20.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며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틀린 지문(2023년 국회직 8급)
- 21.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 틀린 지문(2024년 변호사시험)

11. 통합진보당 해산(현재 2014.12.19, 2013헌다1)

- (1)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며, 통상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

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 영역에서 배제된다.

(2)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해산의 사유

①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⑥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4)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 기출지문 정리

- 1.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옳은 지문(2021 지방직7급)
- 2.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 옳은 지문(2021 법무사)(2024년 행정고시)
- 3.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도 해산될 수 있다. - 틀린 지문(2021년 지방직 7급)
-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 옳은 지문(2023 법원행시)
- 5. 정당 소속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옳은 지문(2021 법무사)
- 6.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옳은 지문(2021 법무사)
- 7.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

- 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 틀린 지문(2024년 행정고시)
- 8.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의 요건이므로, 정당해산결정 시 비례의 원칙 충족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 틀린 지문(2020년 국가직 7급)
 - 9.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틀린 지문(2021 변호사시험)
 - 10.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그 위반이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도 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 틀린 지문(2021 법무사)
 - 11.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 틀린 지문(2021 변호사시험)
 - 12.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옳은 지문(2022년 경찰승진)
 - 13.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옳은 지문(2023 경찰승진)
 - 14. 정당해산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 옳은 지문(2022 법무사)
 - 15.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틀린 지문(2023년 경찰 간부)
 - 16.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 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옳은 지문(2021 지방직7급)
 - 17. 위헌정당해산심판사유 중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옳은 지문(2023년 경찰경력채용)
 - 18.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성을 초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틀린 지문(2024년 법원행시)
 - 19.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 지문(2022 경찰1차)
 - 20.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한다. - 옳은 지문(2019 법원행시)(2023년 국회직 8급)
 - 2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지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틀린 지문(2019년 행시)
 - 22.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 옳은 지문(2021 국회직 8급)(2024년 행정고시)(2023 국회직 9급)
 - 23.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 옳은 지문(2020년 국가직 7급)
 - 24.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적법한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므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틀린 지문(2023 법원행시)
 - 25.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옳은 지문(2021 법무사)

국 어

신동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국어의 규범과 어휘를 중심으로, 푸는 시간 줄여보기 -

1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의 변동	교체(대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첨가	사잇소리현상, ‘ㄴ’첨가
	축약	모음축약, 자음축약(거센소리되기)
	탈락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ㅡ’ 탈락
	도치	음운 도치, 음절 도치

2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 체계

구분	제자 원리	기본자	응용자
초성(자음) 체계	발음기관 상형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획자 → ㅋ, ㆁ, ㆅ, ㅃ, ㅆ, ㆁ, ㆅ, ㅎ 이체자 → ㆁ, ㄹ, ㆅ
중성(모음) 체계	천지인 삼재 상형	·, ㅡ, 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출자 → ㅏ, ㅑ, ㅓ, ㅕ 재출자 → ㅗ, ㅛ, ㅜ, ㅠ, ㅡ, ㅟ

3 높임 표현의 유형

1. 주체 높임

- 직접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나 높임 용언 사용: 계시다, 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 간접 높임: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을 높여 주체를 높임: ‘-시-’, 있으시다, 없으시다
- 압존법: 집안에서와 사제 간 주체 높임의 제약.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도 허용함.)

2. 객체 높임: 목적어 · 부사어 높임: 모시다, 뵈다(뵈다) / 드리다, 여쭙다(여쭙다)

3. 상대 높임법

등 급	‘가다’의 예	명령법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 체	합소체(아주높임)	가십시오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시지요)	—
	하오체(예사높임)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예사낮춤)	가게	가네(감세)	가는가/가나?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아주낮춤)	가거라/가라	간다	가(느)냐/가니?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 체	해요체(두루높임)	가(세/셔)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는군요!
	해체(두루낮춤)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는군!

4 표준 발음 (10제)

- 첫째 음절 ‘의’는 [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는 []로 발음함. 첫째 음절 이외의 ‘의’는 []를 허용하고,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함.

➔ 의사(의사) // 널리리(널리리), 유희(유희) // 내의(내 : 의 / 내 : 이) // 우리의(우리의 / 우리에)

- 결반침 ‘려’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르]로 발음함.

➔ 어덜[어덜], 넓다[널따], 넓네[넌레], 짚다[쩨따], 짚네요[쩨레요], 얹고[알 : 꼬], 얹지[알 : 찌]

다만, ‘밭-’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함.

➔ 밟다[밥 : 따], 밟고[밥 : 꼬], 밟지[밥 : 찌], 밟는[밥 : 는 → 밟 : 는] / 넙-죽하다[넙쑤카다], 넙-적하다[넙쑤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넙-적다리[넙쑤따리]

☆ ‘넙따랑다, 넙쩍하다, 짚따랑다, 알따랑다, 알쩍하다, 알팍하다’ 등은 표기에 반영함.

- 결반침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으로 발음함.

➔ 맑다[막따], 임지[익찌], 갑작갑작하다[각쑤쑤카다], 굶다랑다[국따라타], 굶직하다[국쑤카다], 굶적거리다[국쑤꺼리다], 늣수그레하다[늣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익쑤쑤카다], 흑과[흑과]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은 ‘기’ 앞에서 [리]로 발음함.

- ▶ 맑게[말께], 물고[물꼬], 늙게[늘께], 얼거나[얼꺼나], 입고[일꼬], 읽겠습니다[일겜씀니다]
- 4. ‘ㅎ(ᄒ, ᄒᄒ)’ 뒤 ‘ㄱ/ㄷ/ㅈ’이 결합되면 [ㅋ/ㅌ/ㅊ], ‘ㅅ’이 결합되면 [ㅆ], 받침 ‘ㄱ(ㄱ)’/‘ㄷ’/‘ㅈ(ㅈ)’/‘ㅊ(ㅊ)’이 뒤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합쳐서 [ㅋ/ㅌ/ㅊ/ㅆ]으로 발음함.
- ▶ 달지[달치], 끊기다[끊키다], 까맣소[까 : 마쑈] // 말형[마텝], 유학년[유학년],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몇 할[머탈], 온갖 힘[온 : 가힘], 부딪히다[부딪치다](☆ 부딪치다[부딪치다])

- 다만, ‘ㅎ(ᄒ, ᄒᄒ)’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의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음.
- ▶ 낯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앓은[아는], 싫어도[시러도], 옳은[오른]
 - 5.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연습하여 발음함. 겹받침의 경우에는, 뒤엎것을 옮겨 발음함.**(‘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 꽃을[꼬츄], 무릎에[무르페], 들녘에[들려께], 끝을[꼬츄], 밥술에[밥쏘테] / 밭이[바치], 술이[수치], 끝이[꼬치] / 냇이[넉씨], 닭이[달기], 여덟을 [어덜블], 외곶으로[외곶쓰로], 값을[갑츄]

- 다만, 한글 자모 중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함.
- ▶ 디글이[디그시], 지옥을[지으츄], 키육이[키으기], 티을에[티으세], 피을을[피으블], 히을에[히으세]

6. 모음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 밭 아래[바다래], 잿어미[저더미], 맛없다[마답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 ‘맛없다[마답따], 멋있다[머딤따]’는 [마싹따], [머싹따]로도 발음 가능.

7.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함.

- ▶ 군립[굴 : 립], 선릉[शल릉], 연륙교[열륙교],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기], 달닌[달린]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함.
- ▶ 결단력[결탄력], 공권력[공권력], 기관력[기관력], 동원령[동 : 원녕], 등산로[등산노], 상견례[상견네], 생산량[생산녕], 실천력[실천력], 의견란[의 : 견난],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원뇨]

8. 관형격 기능의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함.

- ▶ 문-고리[문꼬리], 물-동이[물똥이], 물-살[물쌀], 굴-속[굴 : 속], 벌-주[벌쭈], 감-국[감국], 섬-돌[섬돌], 잠-자리[잠자리], 콩-국[콩국], 속임-수 [소김쑈]
- ☆ ‘간단, 등기, 방법, 신기다, 창고, 창구’ 등에서 **들쑈**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함.

한편, ‘불법(不法)[불법/불뻬] // 불법(佛法)[불법], 교과(敎科)[교과(서)] / 교과(敎科), 고가(高架)[고가] // 고가(古家)[고 : 가] // 고가(高價)[고가], 사법(司法)[사법] // 사법(私法)[사뻬]을 구별함.

※ 관건[관건/관견], 효과[효 : 과/효 : 쑈], 안-간힘[안간힘/안간힘], 인-기척[인끼척/인기척], 분수[분수/분쑈], 점수[점수/점쑈], 반값[반 : 갑/반 : 갑], 김-밥[김 : 밥/김 : 뻬] 등은 모두 가능함.

9. 한자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함.

- ▶ 숨-이불[숨 : 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샅-일[상닐], 맨-입[맨닐] // 내복-약내 : 봉냐 // 한-여름[한너름], 학-여울[학너울],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갱닐차], 콩-엿[콩닐] // 담-요[담 : 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ئم똥] // (대/맹)장-ئم[장ئم]
- ☆ ‘안-ئم[아 : 녀], 간-ئم[가 : 녀]’ 등은 첨가하지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도 가능함.

- ▶ 검열[검 : 녀/거 : 멀], 금융[금녕/그똥], 강약[강약/강냐], 연-이울[여니울/연니울]
-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들-일[들 : 릴], 솔-일[솔릴]

※ 다음과 같은 단어는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음. ▶ 송별-연[송 : 베흔], 등-용문[등용문]

☆ 금요일[그요일], 함유[하뮤]/굴욕[구욕], 밀약[미략], 일요일[이료일], 절약[저략], 활용[화롱] 등은 ‘ㄴ’이나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고, 받침을 연습하여 발음함.

10. 사이시옷이 올 때는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 ▶ 냇가내 : 까/냇 : 까, 셋길새 : 킷/셋 : 킷, 깃발[기뻬/기뻬], 햇살[해쌀/해쌀]

5 표준어와 맞춤법 (10제)

1.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암’도 이에 준함)

- ▶ 수곰, 수개미, 수거미, 수고양이, 수평/장끼, 수나사, 수늬, 수벌, 수소/황소, 수용 // 수기와, 수뚱지, 수개, 수캉아지, 수컷, 수탕나귀, 수틀찌귀, 수탉, 수평아리 (기껏 개강 때 달뿔 걸린 당돌한 돼지) [☆ 수양, 수염소, 수취 (양염취)]

2. ‘윗-’으로 통일

- ▶ 윗넙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배, 윗벌, 윗사람,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 위쪽, 위채, 위층, 위턱, 위팔 //
-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윗-’으로 ▶ 윗국, 윗기, 윗돈, 윗어른, 윗통, 윗퐁(외퐁)
- [☆ 윗웃(상의)/웃웃(겉웃)]

3. 준말과 본말을 표준어로 ▶ 노을/늘, 막대/막대기,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

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꺼

《머물다/머무르다, 서둘다/서두르다, 서툴다/서투르다, (내)딘다/(내)디디다》 ⇒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머물어, 서둘어서, 서툴었다, (내)딘어’는 ‘머물러, 서둘러서, 서툴렀다, (내)디더’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참] 짓물다(x), 거치르다(x)

4. 복수 표준어

→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때때(신, 옷), 꺼림(직/직)하다/껴름(직/직)하다, 나무랭이/나무러이, 봉숭아/봉선화, 가뭍/가물, 가없다/가렵다, -거리다/-대다, 곱곰/곱곰이, 넝쿨/덩굴, 되우/되통/되게,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뜨리다/-트리다, 만끔/만치, 뽀두라지/뽀루지, 여태/입때,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일찌감치/일찌거니, 좀처럼/좀체, 척/체, 추어올리다/추어주다/추켜세우다/추켜올리다(칭찬하다), 간질이다/간지럽하다, 남(우)세스럽다/남사스럽다, 만날/맨날, 땃자리/땃자리, 복사뼈/복숭아뼈, 삐걱삐걱/허겁스레기//~기에/~길래, 피발개발/개발새발, 눈초리(표정, 위치)/눈꼬리(위치), 뜰/뜨락(+추상적 공간), 손자/손주(손자+손녀), 황허케/황하니, 두루뭉술하다/두리뭉실하다, 맨송맨송/맨송맨송/맹송맹송, 바둥바둥/바둥바둥, 새치름하다/새초롬하다, 아웅다웅/아웅다웅, 야별치다/야멸차다, 쪼뽀뽀하다/쪼뽀뽀하다, 치근거리다/추근거리다// 예뻐다/이쁘다, 마을/마실(가다), 차지다/찰지다, 잎사귀/잎새, 푸르다/푸르르다, -고 싶다/-고프다, (-지) 마라/말아라, 마/말아, 마요/말아요, 주책이다/주책없다/주책맞다/주책스럽다

5. 두음법칙

- (1) (ㄴ → ㅇ) → 연년생(年年生), 연도, 회계 연도/회계연도, 연월일, 연이율, 연 10%의 이율/(한자 접두사나 합성어에서)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연말-연시 [☆ 삼 년/남녀, 은닉, 생년월일, 천년왕국]
- (2) (ㄹ → ㅇ) → 양심(良心), 유행/사육신, 무실역행/(모음이나 ‘ㄴ’ 받침 뒤) 비율, 백분율, 할인율, 출산율 [☆ 쟁률, 오락도/음률, 경쟁률, 합격률, 취업률, 사망률, 출생률, 명중률]
- (3) (ㄹ → ㄴ) → 뇌성, 능묘/내-내월, 상-노인, 실-낙원, 부화-뇌동 [☆ 고령지, 한랭전선, 연로, 낙뢰, 동구릉, 왕릉, 태릉/냉랭하다, 녹록하다, 늪늪하다]

6. 주요 용언의 활용

- (1) ‘ㄹ’ 탈락 용언 →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그시다, 둥그오/-지 마라/말아라, -지 마/말아
- (2) ‘ㄴ’ 탈락 규칙 용언 → 담그다 : 담가, 담갔다/잠그다 : 잠가, 잠갔다/치르다 : 치러, 치렀다
- (3) ‘ㄹ’ 불규칙 용언 →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아름다워, 아니꼬워 [☆ 고와, 도와]
- (4) ‘ㄹ’ 불규칙 용언 → 바르다 : 발라, 발랐다/벼르다 : 벌러, 벌렸다/가팔라 : 가팔라, 가팔랐다
- (5) ‘ㅎ’ 불규칙 → 하얗다 :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야오·하얏소/노랗다 : 노라네, 노란, 노라니, 노래

7. 접미사가 결합된 말

- (1) 대개 ‘-이, -음/-오’ 접사나 ‘-이, -히’ 접사가 결합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음 → 길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 늘그막, 빠드렁니, 끄트머리, 이파리]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8. 사이시옷 표기

-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갓값, 낫값, 나룻배, 나룻가지, 날갯짓, 냇가, 냇가지, 머릿기름, 모깃불, 사잇길/셋길, 선것국, 순댓국, 쇠조각, 아랫집, 윗글, 아랫글, 잇자국, 장맛비, 낫값, 헛바늘 [☆ 해님/개구멍, 머리글, 머리글자, 소리글자/개똥, 개필, 뒤꽂무니, 보리쌀, 허리띠, 허리춤]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땀나물, 땀놀이, 콧날,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잇몸, 꺾목, 냇물, 빗물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두렛일, 뒷일, 뒷입맛, 배갯잇, 옷잇, 꺾일, 나뭇잎, 땀일, 허드렛일
-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교양이과, 낫병, 막넛동생, 머릿방, 북엇국, 붓둑, 사글셋방, 사자밭, 셋강, 신봉감, 아랫방, 자릿세, 장밋빛, 전셋집, 절댓값, 진돗개, 콧병, 땀술, 수, 헛가루, 헛배, 등꽃길, 하꽃길, 흥밋거리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갓날, 제삿날, 훗날, 붓물, 텃마루, 양치물, 팻말, 꽃말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6개)
 - 뉘간(退間), 곳간(庫間), 횡수(回數), 숫자(數字), 셋방(貰房), 차간(車間) : 퇴고 회수 세차(세) [☆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도수(度數), 마구간(馬廄間), 소주잔(燒酒盞), 시가(時價), 이점(利點), 장미과(薔薇科),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제상(祭床), 초점(焦點), 화병(火病)]
 - ✓ 노랫말, 본딤말, 존댓말, 혼삿말, 혼잣말, 시켓말/ 겹사말, 꼬리말, 머리말, 반대말, 예사말, 인사말, 나라말, 우리말, 심마니말, 겨레말// 개나리길, 장미길, 버드나무길// 핑크빛, 피자집, 납뽀볼

9. 준말 표기

- (1)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적지 않은/적잖은, 만만하지 않다/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 (2) 만만하지/만만치, 적절하지/적절치//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넉넉찮다,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섭섭찮다, 깨끗하지 않다/깨끗찮다

10. 유사어 구별

- (1) 가름(← ‘가르다’, 나눔·구별·분별) → 둘로 가름//갈음(← ‘갈다’, 교체·교환·대신함) →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합니다.
- (2) 걸잡다 → 걸잡을 수 없는 상태//걸잡다 → 걸잡아서 이를 걸릴 일
- (3) 그러므로(그러니까) →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산다.//그러므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 (4) 느리다(속도) ➔ 행동이/진도가/성미가 // 늪이다(길이) ➔ 고무줄을/엿가락을/바짓단을 // 늘리다(양, 수, 힘) ➔ 수출량을/학생 수를/세력을/실력을/재산을.
- (5) 떠다 ➔ 임무를/노기를 // 떠다('뜨이다'의 준말, 피동) ➔ 원고에 오자가 눈에 띈다./눈에 띄게 달라졌다./귀가 변쩍 띄는 // 떠우다('뜨다'의 사동사) 편지를/배를/누룩을.
- (6) 마치다 ➔ 벌써 일을 마쳤다. // 맞히다(사동) ➔ 정답을 맞히다./퀴즈의 답을 맞히다. // 맞추다(사동) ➔ 안경을 맞추다./문짜를 문틀에 맞추다./친구들끼리 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일정을 맞추다.
- (7) 받치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 받치다 ➔ 우산을 받치고 간다./책받침을 받친다. // 받히다(피동) ➔ 쇠뿔에 받혔다. // 받치다 ➔ 술을 체에 받친다.
- (8) 부딪치다(강제) ➔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부딪히다(피동)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 (9) 부치다 ➔ 힘이 부치는 일이다./편지를/논밭을/빈대떡을/식목일에 부치는 글/회의에 부치는 안건/인쇄에 부치는 원고/삼촌 집에 숙식을/비밀에/투표에 // 붙이다(사동) ➔ 우표를/책상을 벽에/홍정을/불을/감시원을/조건을/취미를/별명을/내기에 1000원을/이유를/다리에 힘을/교미를.
- (10) 썩이다 (사동) ➔ 엄마 속을 썩였다. // 썩히다(사동) ➔ 음식을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을 만든다./아까운 재능을 썩히다.
- (11) 지그시 ➔ 눈을 지그시 감았다. // 지긋이 ➔ 나이가 지긋이 든 반백의 신사
- (12) 하노라고 ➔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하느라고 ➔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 (13) -대(놀람이나 못마땅함/간접적 전달 '-다고 해') ➔ 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쩔 이렇게 잘생겼대?/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사람이 아주 똑똑하대./철수도 오겠대?(남이 말한 내용의 간접적 전달) // -데(-더라) ➔ 그가 그런 말을 하데./경치가 과연 좋데.(경험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 (14) -(으)로서(자격, 신분, 위상, 위치, 가치, 시작)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 -(으)로써(수단, 방법, 재료, 도구, 이유, 시간 쉼에 넣는 한계) ➔ 닭으로써 평을 대신했다./감금되는 ~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 (15) -(으)므로(어미)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으)므로(씨)(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6 띄어쓰기 (10제)

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씀.

➔ 꽃에서부터,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는커녕, "알았다."라고, 방에 설람, 자주 만남시다 그러

2. 의존 명사는 띄어 씀.

➔ 왔던 √갈에, 내 √나름으로, 가는 √네가, 자기가 옳다는 √동, 제 √만에는, 친구 √때문에, 그럴 √리가, 갔을 √적에, 할 √줄 안다, 벗은 √채, 이는 √체(척), 잘 먹는 √죽에, 할 √터이나(테나/테고/테니/텐테/테아), -기에/-(으)니까 √망정이지(☆ -르망정 : 어미), 급 서 √돈, 북어 한 √괘, 오징어 한 √줄

3. 만큼, 대로, 뿐, 만 (조사 // 의존 명사)

➔ 전봇대만큼 크다, 불 √만큼 보았다, 법대로 해라, 약속한 √대로, 온통 남자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웃고만 있을 √뿐이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4. 만, 지 (조사, 어미 // 의존 명사-경과한 시간, 횟수)

➔ 하나만 알고, 그것만 못하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우리가 얼마 √만인가, 나는 두 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

5. 데 (-는데 : 설명 감탄 -어미 // 데 : 것 곳 경우 -의존명사)

➔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은 곳이지, 나무가 정말 큰데. // 올 √데 같 √데 없는 사람,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다,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6.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최치원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강 √선생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황보 √지봉

7. 수(數)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삼조 √이천삼백십이일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3조 √2312억 √3456만 √7898, 이만 오천 √원/25,000 √원/25,000원

8.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결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책상, 결상 √두이 있다.

9.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줌 √더 √큰 √것/줍더 √큰것, 이 √말 √저 √말/이말 √저말, 한 √일 두 √일/한일 √두일

10.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다 먹어 √버렸다/다 먹어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비가 올듯하다

7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10제)

1.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 (7자음)만 적는다.

➔ 굿모닝(good morning), 디스켓(diskette), 마켓(market), 숍(shop), 스낵(snack), 스크랩(scrab), 집시(Gypsy)

2.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가스(gas), 가운(gown), 피에로(pierrot), 사이즈(size), 사이렌(siren), 사이클(cycle), 사인(sign), 산타클로스(Santa Claus),

삿포로(Sapporo), 센터(center), 서비스, 서커스(circus), 서클(circle), 선글라스(sunglass), 아틀리에(atelier), 재즈(jazz), 잼(jam), 카페(café), 코냑(cognac), 콩트conte), 파리(Paris) [☆ 빨치산/파티잔, ‘쓰촨성’, ‘마오쩌둥’, ‘쓰시마섬’, ‘푸켓’, ‘호찌민’]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로봇(robot), 라켓(racket), 로켓(rocket), (슈퍼)마켓(supermarket), 보이콧(boycott), 셔벗(sherbet), 소켓(socket), 스폿(spot), 알파벳(alphabet), 카펫(carpet), 티켓(ticket), 파일럿(pilot) [☆ 네트(net), 메리트(merit), 배트(bat), 비트(bit), 세트(set), 쇼크(shock), 히트(hit), 히프(hip)]

4. 유음, 비음, 이중모음, 장모음 등의 뒤에 오거나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 미뉴에트(minuet), 샤프(sharp), 지프(jeep), 케이크(cake), 테이프(tape), 플루트(flute) // 애드리브(ad-lib), 피라미드(Pyramid), 바리케이드(barricade), 로브스터(lobster) / 랍스터

5. 어중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르르’로 적는다.

➔ 가톨릭(catholic), 곤돌라(gondola), 글라디올러스(gladiolus), 글라스(glass), 나일론(nylon), 메들리(medley), 머플러(muffler), 멜론(melon), 바셀린(vaseline), 블라우스(blouse), 블라인드(blind), 블로킹(blocking), 블루스(blues), 스프링클러(sprinkler), 슬리퍼(slipper), 알칼리(alkali), 인플레이션(inflation), 카스텔라(castella), 카탈로그(catalog), 클라이맥스(climax), 클래스(class), 클래식(classic), 클락슨(klaxon), 클럽(club), 클로버(clover), 클리닉(clinic), 클리닝(cleaning), 킬로(kilo), 파일럿(pilot), 팜플릿(pamphlet), 플라스틱(plastic), 플라자(plaza), 플래카드(placard)

6.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그리스(Greece), 그리스(grease, 기름), 덴마크(Denmark), 마가린(margarine), 마케팅(marketing) [☆ 셀룰로오스/셀룰로스(cellulose), 알코올(alcohol), 요오드(Jod)]

7.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레인보(rainbow), 도넛(doughnut), 스노(snow), 윈도우(window), 쇼윈도(show window), 소파(sofa), 스트로(straw), (아이)새도(eye shadow), 옐로(yellow), 러시아워(rush hour), 플라워(flower)

8. 따로 쓸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더그아웃(dugout), 아웃렛(outlet), 하이라이트(highlight), 헤드라이트(headlight)

9. 로마자 표기에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속리산 Songnisan,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독립문 Dongnimmun

10.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반영하는 전음법(轉音法)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전자법(轉字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압구정 Ap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낙성대 Nakseongdae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행정 구역 단위 표기에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삼죽면 Samjuk-myeon

국 사

정우교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001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건국 ~ 3 ^c	4 ^c	5 ^c
고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명성왕(기원전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유이민(주몽) - 압록강 토착 세력 ▪ 태조왕 (53~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위 세습 (형제 상속, 고씨) - 동옥저 복속 ▪ 고국천왕 (179~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5부 - 부자 상속 - 진대법 실시 (을파소,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천왕 (30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평 점령(311) - 낙랑 축출(313), 대방 축출(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진출의 발판 마련 ▪ 고국원왕 (331~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연(모용황)의 침입(342) - 근초고왕(백제)의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성 함락, 전사 ▪ 소수림왕 (371~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수용(372, 전진) -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개토대왕 (391~413) - 북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가야 연맹 해체 - 거란, 후연 격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동과 만주 대부분을 차지 - 영락(최초의 연호) ▪ 장수왕 (413~491) - 남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남·북조와 수교 - 평양 천도(427) → 한성 함락 - 한강 이남 점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원 고구려비, 호우명 그릇 - 홍안령 일대 지두우 분할 점령
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조 (기원전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유이민 - 한강 토착 세력 ▪ 고이왕 (234~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등제 정비 (6좌평, 16관등) - 관복제 도입(260) - 목지국 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유역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초고왕 (346~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한의 잔여 세력 정복(369) - 가야에 대한 지배권 행사 -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 - 해외 진출 → 요서, 산둥 / 규슈 - 왜왕에게 칠지도 하사(368) - 서기(고흥) - 부자 상속 ▪ 침류왕 (384~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공인(384, 동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왕 - 나제동맹 성립(433) ▪ 개로왕 (455~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왕의 공격, 북위에 국서 - 한성 함락, 전사(475) ▪ 문주왕 (475~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공주) 천도(475) ▪ 동성왕 (479~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제동맹 강화(소지, 493)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혁거세(기원전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로국 (6촌) (경주 토착 세력) - 유이민 세력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 차지 ▪ 내물마립간 (356~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의 침입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개토 대왕의 지원, 격퇴 → 고구려 군대의 주둔 → 고구려의 내정 간섭 → 호우명 그릇 - 김씨 왕위 계승권 확립 - 마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눌지마립간 (417~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제동맹 성립(비유왕, 433) - 부자 상속 - 불교 전래(목호자) ▪ 소지마립간 (47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제동맹 강화(결혼동맹) - 백제, 동성왕(493)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6 ^C	7 ^C
 <p>[가야] B(금관가야) → A(대가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관가야 - 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법흥왕) 대가야 - 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진흥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왕 (59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령 이북 회복, 신라 압박(온달, 590) / 신집 5권 -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선제 공격(598) → 수와 전쟁(살수 대첩·을지문덕, 612) 영류왕 (618~642) - 천리장성 축조(631~647) 보장왕 (642~668) → 연개소문 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전쟁(안시성 전투·양만춘, 645) - 멸망(668) → 안동도호부 설치(668) 부흥 운동 ← 신라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승(보덕국왕 → 진골) / 검모잠·고연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령왕 (501~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22 담로 → 왕족 파견 - 중국, 남조(양)과 교류 시작(백제영동대장군) 성왕 (523~554) - 제 2의 전성기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부여, 538) 천도, 남부여(국호) - 중앙·지방 제도 정비 / 불교 진흥(겸익) → 일본에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552) - 중국, 남조(양)과 교류 강화 - 신라와 연합, 한강 유역 일시 회복 → 진흥왕의 배신 → 전사(관산성 전투, 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왕 (600~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남지, 왕흥사·미륵사 창건, 익산 천도 시도 의자왕 (641~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동증자 / 대야성 등 신라 40여 성 함락(642) - 멸망(660) → 웅진도독부 설치(660) → 소부리주(671) 부흥 운동(660~663) ← 왜의 지원(백강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성 → 왕자 풍(661) / 복신·도침 - 임존성 → 흑치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증왕 (500~514) - 한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국호), 왕호 사용 - 수도·지방 행정 구역 정리 - 우산국 복속(이사부) / 순장 금지, 우경 실시 법흥왕 (514~540) - 건원(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부 설치, 율령 반포, 공복 제정 / 상대등 설치 - 불교 공인(이차돈 순교, 527) / 금관가야 정복 진흥왕 (540~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도 개편, 국사(거칠부), 황룡사 창건 - 한강 유역 진출, 신주 설치 → 관산성 전투 → 수, 당과 직접 교류(당항성) - 대가야 정복(562) / 단양 적성비, 순수비(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평왕 (579~632) - 세속 5계, 걸사표(수, 원광) 선덕여왕 (632~647) → 최초 여왕 / 지기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성대 / 분황사, 영묘사 / 황룡사 9층 목탑 진덕여왕 (647~654) - 태평송(당) / 태화, 아홀 무열왕 (654~661) - 최초의 진골, 백제 멸망 문무왕 (661~681) → 삼국 통일(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림도독부 설치(663) / 취리산 회맹(665) - 나당 전쟁(소부리주 설치 / 매소성·기벌포 전투) 통일의 한계 - 외세 이용, 대동강~원산만 이남

#

002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2

② 남북국의 정치

- 통일 신라의 발전

중 대	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왕 (31 : 681 ~ 692) - 전제 왕권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흠돌의 난 진압(681) → 진골 세력 숙청 - 집권 체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국학 설립(682) - 6 두품 세력의 성장(집사부 시랑) - 갑은사, 만파식적(682) / 달구벌 천도 시도 ▪ 성덕왕 (33 : 702 ~ 737) - 무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지급, 공자와 제자의 화상 국학에 안치 ▪ 경덕왕 (35 : 742 ~ 765) - 문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학 → 태학감(747) / 녹읍 부활(757) -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성왕 (38 : 785 ~ 798) - 독서삼품과 설치 ▪ 헌덕왕 (41 : 809 ~ 826) - 김헌창, 김범문의 난 ▪ 흥덕왕 (42 : 826 ~ 836) - 청해진 설치(장보고) ▪ 진성(여)왕 (51 : 887 ~ 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종·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 견훤, 궁예의 성장, 최치원의 시무 10조 제시 - 향가집 <삼대목> 편찬(위홍, 888) ▪ 새로운 지방 세력의 성장 - 호족과 6 두품 ▪ 진성여왕 이후 - 후삼국 시대

- 발해

무 왕 (2 : 719 ~ 737, 대무예)	문 왕 (3 : 737 ~ 793, 대흠무)	선 왕 (10 : 818 ~ 830, 대인수)
시 작	발 전	전 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C 초 → 북만주 일대 장악 ▪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수 말갈을 이용, 발해 견제 - 흑수 말갈 공격(대문예 X) - 산둥(장문휴, 수군), 요서 공격 ▪ 신라 - 북방 강화(성덕왕) ▪ 돌궐, 일본과 외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신라 견제 ▪ 일본에 보낸 국서(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계승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동모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경 → 상경 → 동경 (5대 성왕, 상경 천도) ▪ 당과 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성 6부제 실시 - 중국도 / 빈공과 합격 - 발해국왕, - 대홍보력금륜성법대왕 ▪ 신라 - 신라도 개설(경덕왕) ▪ 일본에 보낸 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국왕, 천손 ▪ 황상(皇上), 황제국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야발(대조영의 동생) 직계 ▪ 말갈 대부분을 복속, 요동 진출 ▪ 지방제도 정비(5경 15부 62주) ▪ 해동성국
인 안	대 홍	건 홍

#

003

2. 고려의 정치

①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창 ▪ 중앙 관리·사성·결혼 정책 ▪ 사십관, 기인 제도 ▪ 정계·계백료서 / 훈요 10조 ▪ 북진 정책 - 청천강 ~ 영흥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비안검법(956) ▪ 과거제도 실시(958) - 쌍기 ▪ 백관의 공복 제정(960) ▪ 공신과 호족 숙청 ▪ 광덕·준풍 / 황도, 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승로 - 5조 정적평·시무 28조 ▪ 2성 6부 / 도병마사, 식목도감 ▪ 지방관 파견 (12목) 시작 → 향리 제도 개편(호장, 부호장) ▪ 국자감 정비 ▪ 거란 침입 - 서희, 강동 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분전(940) ▪ 연등회, 팔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현공부법 ▪ 귀법사(균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원중보(996) - 최초 ▪ 연등회, 팔관회 폐지

② 원 간섭기의 개혁 정치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 격하 / 내정 간섭 ▪ 영토 상실, 일본 원정 ▪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림원(1298) - 인사, 왕명출납 ▪ 소금·철 전매제(각염법, 1298) → 국가 재정 확충 시도 ▪ 재상지중(복위교서) ▪ 만권당(1314) - 원 학자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친원 세력 숙청(기철), 관제 복구 정동행성(이문소) 혁파 , / 쌍성총관부 수복 → 요동 공략 ▪ 홍건적(1359, 1361)의 침입 ▪ 2차 - 신돈 등용, 전민변정도감 정비, 성균관·과거제 정비 → 신진 사대부 등장

3. 조선의 정치

① 조선 초기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전 - 조선경국전 - 재상 중심 정치 ▪ 불씨잡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자의 난 ▪ 국왕 중심 통치 - 6 조 직계제 실시 - 사간원 독립 - 사병 폐지 ▪ 호패법 실시 ▪ 노비 변정 사업 ▪ 향·부곡 →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서사제 ▪ 집현전 설치 ▪ 4군, 6진 개척 ▪ 쓰시마(이종무) ▪ 전분 6등, 연분 9등 ▪ 칠정산 편찬 ▪ 훈민정음 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유정란 ▪ 6 조 직계제 부활 ▪ 집현전 폐지 ▪ 경연 중단 ▪ 경국대전 편찬 시작(호·형진) ▪ 보법 / 직전법 ▪ 원각사지 10층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국대전 반포 ▪ 홍문관 설치 - 집현전 계승, 경연 주관 ▪ 사림과 등용 ▪ 관수관급제 ▪ 동국통감

② 조선 후기 - 영조 Vs 정조

영조	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평과 육성(탕평비), 군영 정비 ▪ 산림 존재 X, 서원 정리, 이조전랑 권한 축소 ▪ 속대전 편찬, 균역법 시행 ▪ 사형수 삼심제,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 이인좌의 난(청주, 1728) / 나주 패서 사건(1755) ▪ 임오화변(176) → 시파·벽파 ▪ 완론 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파 - 소론·남인 + 일부 노론 중용 ▪ 초계문신 제도 → 규장각, 지방 수령 권한 ↑ → 고급도서집성 수입, 문체반정 시도 ▪ 장용영 설치, 무예도보통지, 대전통편, 화성 ▪ 신해통공 - 금난전권 폐지(육의전 제외) ▪ 서얼·노비 차별 완화 ▪ 준론 탕평 / 상인, 격쟁

#

004

V.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1. 경제 제도

① 수취 체제(세금)

조 선		
초 기 (15 ^C)	중 기 (16 ^C)	후 기 (17 ^C - 19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량의 1 / 10 (1 결당 30두) → 경창(조운) - 잉류지역 - 평안도·함경도 ▪ 공법 (세종) - 연분 9 등법 → 풍흉, 지역 단위, 20 ~ 4 두 - 전분 6 등법 → 비옥도, 1결의 면적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납 → 대납가 ↑ ▪ 방납의 폐단 → 유망 농민 증가 ▪ 개선 시도 - 수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정법(인조) - 전세의 정액화 - 풍흉에 관계없이 1 결당 4 두 - 국가 수입 감소 ⇔ 각종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세, 토산물 ▪ 종류 - 상공·별공·진상 ▪ 중앙 관청 → 군현 할당 → 가호 할당 ▪ 폐단 - 생산량 감소, 생산지 변화 - 다른 곳에서 구입,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역 기피 → 군역의 요역화 ▪ 대립제 → 대립가 ↑ ▪ 방군수포·군적수포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법(선혜청) - 공납의 전세화(1결당 12 두) - 농민 부담 감소, 지주 부담 증가 - 경기도(광해군) → 전국 확대(숙종) - 공인 등장,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현물 징수 존속 → 별공, 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역 - 정군, 보인, 면제 ▪ 요역 - 정납의 수, 토지 8 결당 1 인 → 실제로는 임의로 징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역법(균역청) - 영조, 1년 1필 - 이중 삼중의 군포 징수 → 부과량 증가 - 결작 / 선무군관포 / 어장·선박·염세

② 수취 체제(세금)

삼 국	남북국		고 려	조 선
상 대	중 대	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읍 ▪ 식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전 지급 ▪ 녹읍 폐지 ▪ 정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읍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분전 ▪ 시정 / 개정 / 경정 전시과 ▪ 전시과 붕괴 → 녹과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전법(고려 공양왕) ▪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 직전법 폐지(명종)

2. 경제 활동 - 조선 후기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화폐	대외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내기법 확대(이모작) → 광작 → 부농 증가 ▪ 견종법 ▪ 상품 작물 ▪ 쌀의 상품화 ▪ 농가집성 ▪ 실학적 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 수공업 발달 - 납포장 증가 - 선대제 - 독립 자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 (설점수세) ▪ 잡채 ▪ 상인 물주 ▪ 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공인 / 도고 - 금난전권 폐지 (정조) - 송상 - 경강상인 ▪ 장시 → 5 일장 ▪ 포구(객주, 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통 → 상평통보 ▪ 전황 ▪ 환·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 - 개시 / 후시

#

005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사상사

① 불교

삼국	남북국	고려	
상대	중대 ~ 하대	중기	무신 집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역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효 - 불교의 대중화 의상 교종 Vs 선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천 - 교선통합, 천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 결사 운동 - 요세, 지눌 지눌 - 선교통합, 조계종 혜심 - 유불일치설

② 역사서

- 고려

고려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조실록 7대 실록 구삼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사기 (1145, 김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명왕편 (1192, 이규보) 해동고승전 (1215, 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 (1281, 일연) 제왕운기 (1287, 이승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략(이제현)
고구려 계승 의식	신라 계승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	고조선 계승 의식	

- 조선 초기

동국통감	서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조 ~ 성종, 고조선에서 고려 말 /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	-----	---

- 조선 후기

이 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중심의 역사관 비판 	
안정복	동사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통론 체계화(삼한 정통론), 고증 사학 토대 마련 	
이공익	연려실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시대 정치와 문화 정리, 기사본말체 	
한치윤	해동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자료 이용 → 민족사 인식의 폭 확대 	
이종휘	동사	고구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로 확대 → 한반도 중심 사관 극복
유득공	발해고	발해사	

2. 과학기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후 기
천문학	사천대	서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상열차분야지도 칠정산(세종,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석문, 홍대용 - 지전설, 무한우주론 시현력(김육)
	선명력(당)	수시력(원, 충선왕)		
인쇄술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현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종 - 주자소, 계미자 세종 - 조지서, 갑인자, 식자판 조립 방안 	
의 학		향약구급방(현존)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백과사전)	동의보감(허준) 동의수세보원(이재마)
무 기		최무선(화통도감)	신기전, 거북선	

3. 기타 - 조선

초 기	중 기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강행실도(세종) 국조오례의(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림 - 소학·주자가례 보급 정부 - 이륜행실도·동몽수지 	백과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팔도도(태종) 	조선방역지도 - 현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곤여만국전도 동국지도(정상기) - 100리척 대동여지도(김정호) - 10리
동국여지승람(성종)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 현존	택리지(이중환)

4. 예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중 기	후 기
궁궐과 사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공공건물 무위사 극락전	서원 건축	법주사 팔상전 화성 / 경복궁 중건
월정사 8각 9층 석탑(송)	경천사 10층 석탑(원)	원각사 10층 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철불, 석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 좌상 				
고려청자	상감청자	분청 사기	(순)백자	청화 백자
구양순체	송설체	한호(석봉체)		이광사(동국진체) 김정희(추사체)
전문 화원 문인화	천산대렵도 관음보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다양한 화풍 (산수화·사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경 산수화 풍속화 민화의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악 - 대성악(송), 궁중 음악 속악(향악) -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놀이 산대놀이 성행 판소리 한글소설 사설시조

#

006

VII. 근대 사회의 전개

2. 러일 대립기 - 개혁

갑오 개혁 - 1 차	갑오 개혁 - 2 차	을미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군 섭정, 군국기무처 주도 • 갑신정변, 동학농민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 박영효 주도 → 흥범 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간섭 - 러·프·독 • 박영효 실각, 을미사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 개국 연호 사용 • 과거 제도 폐지 • 재정의 일원화 - 탁지 아문 • 은본위 화폐제(은화, 백동화) • 조세의 금납화 • 신분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의 관계 청산 • 내각 권한 강화(8아문 → 7부) • 지방관 권한 축소(8도 → 2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권 / 사법권, 군사권 X • 재판소 설치 → 사법권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호 - 건양 • 친위대, 진위대 설치 • 태양력 사용 • 단발령 시행 • 종두법 시행 • 소학교 설치 • 우편 사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연좌법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입국조서 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 사범학교 설립 → 외국어학교 관제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의병 • 아관파천 → 개혁 중단

독립협회	광무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관파천 이후, 이권 칙탈 심화 • 민중 계몽 - 서재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신문(1896. 4) → 독립협회(189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1897) / 광무개혁(1899) •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 비판 → 점진적 개혁 • 구분 신참 • 개혁 기구 - 교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 민중 계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료 주도, 민중 참여 → 계몽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 황권 강화 - 대한민국 국제 • 원수부 설치(황제의 군권 강화), 시위대·진위대 • 간도 편입 정책 → 간도 관리사 파견(이범윤)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 자주 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 주도, 만민공동회 ⇔ 러, 이권 칙탈(절영도 조차 등) • 3기 - 자유 민권, 자강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양 내각 수립, 관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중추원 설립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업 진흥 - 근대적 회사 설립 • 근대적 시설 확충 • 교육 장려 - 중학교, 상공학교

3. 국권피탈기 - 국권 회복 운동(의병)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
<p>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시행</p>	<p>을사 보호 조약, 외교권 박탈</p>	<p>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 - 보수 유생 • 참여 - 민중(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 농민군 잔여 세력이 대거 가담 • 해산, 아관파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령 철회 → 고종, 해산 권고 조치 → 농민 일부, 활빈당에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익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유생, 대마도 • 신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민 의병장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군인 → 의병 합류 • 의병 연합, 13도 창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영, 허위 →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 요구 → 서울 진공 작전 시도 • 일, 남한 대토벌 (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 → 국외, 독립군 활동

#

007

VIII.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 통치

한일병합 1910	3·1 운동 1919	만주사변 1931	중일전쟁 1937	광복 1945
1기 1910'S 무단통치		2기 1920'S 문화통치		3 - 2기 1930 ~ 40'S 민족말살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 - 육·해군 대장 • 중추원 - 총독자문기관 • 헌병 경찰 - 즉결, 태형 • 관리, 교원 - 칼, 채복 • 자유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 - 문관 가능 • 지방 자치 - 평·협의회 • 제도 개정 - 보통 경찰 • 무관 복제 폐지 • 자유의 제한적 허용 - 신문 발행 (조선·동아) ↔ 치안 유지법 • 교육 기회 확대 • 친일세력 양성, 자치운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국 신민화 정책 → 동화 - 신사참배, 궁성요배 - 황국신민서사 암송 - 내선일체, 조선어 과목 폐지 - 일본식 성명 강요 - 조선·동아 폐간 - 애국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 허가제 • 산림·어업·광업령 • 철도, 항만, 도로 • 담배, 인삼 - 총 전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미증식계획 • 회사령 폐지 - 신고제 → 일본, 산업이민, 경 • 관세 철폐, 신은행령 ↔ 물산장려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동원 체제 (인) 지원병, 징용 / 징병, 학도병, 정신대 (물) 미곡 공출·배급, 금속제 공출·배급

2. 1920년대 민족 독립 운동

6·10 만세 운동	신 간 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수탈 정책 • 식민지 차별 교육 • 순종의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독립 운동의 혼란 • 임시 정부의 위기 • 중국의 1차 국공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차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사회주의 +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타협 민족 + 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격문 살포 → 만세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민흥회 + 정우회 선언 • 전국 지회, 농민·학생 운동 지원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진상조사단 파견 → 민중 대회 개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학생 사건 → 한·일 학생 충돌 → 일본 경찰의 편파 처리 → 전국 확대 •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민족 운동 주도 • 민족 + 사회주의 연대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소 → 일제 탄압, 이념 대립 → 코민테른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운동 이후 → 최대 민족 운동

[참고] 국외 - 무장 독립 운동의 전개 시기 구별

1기 1910'S	2기 1920'S	3-1기 1930'S 전반	3-2기 1930'S 후반 이후
준비	본격	한중연합작전	통합 → 분화
독립군 기지 건설 → 독립군 양성	전 - 참 - 재 - 타 - 통 X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 임시 정부·한국광복군

#

008

IX. 현대 사회의 발전

1.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대상 구별, 시기 구별

1	모스크바 3상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 8. 15 / 미·영·소 •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장 5년의 신탁 통치 • 반응 - 우익 즉각적인 독립 → 반탁, 반소·반공 운동 좌익 임시정부 수립 → 반탁에서 지지로 선회 • 결과 - 여론은 반탁, 좌우 대립 심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4 / 참여할 단체의 범위 → 대립, 무기한 휴회 • 미국 모든 단체, 소련 모스크바 3상회의를 받아들이는 단체만
	정읍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6, 이승만 - 단독 정부 수립 주장 → 한국민주당 지지
	좌우합작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7 / 여운형·김규식 → 중도파 주도 • 미군정 지원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찬성] 김구, 이승만, 여론 / [반대]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 과도 입법위원 구성 → 한국민주당 주도 → 여운형 탈퇴 → 미군정 지지 철회 → 2차 미소공위 결렬 → 여운형 암살 • 한계 - 실세들의 불참, 미군정의 지원 철회
2	UN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 소련, 거부 → 가능한 지역 총선거 (UN총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총회)
	남북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 4 / 김구·김규식 • 남북협상 제의 → 남북 지도자 회의(남북연석회의, 평양) → 실패 → 5·10 총선거 불참 선언 → 김구 암살(1949. 9)

2. 개헌

제헌	1948	•대통령 간선제(국회)	4년 중임
1차	1952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발체개헌, 6·25 전쟁 중
2차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	•의원내각제, 양원제(국회)	4·19 직후
4차	1960	•3·15 부정선거관리자, 부정축재자 등 처벌	
5차	1962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국회)	
6차	1969	•대통령 3선 허용	3선 개헌
7차	1972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체제, 임기 6년
8차	1980	•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단임제(7년)	5공화국 헌법
9차	1987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5년)	현행 헌법

3. 통일 정책

박정희 정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적십자 회담(1971. 9)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통일의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직통 전화 가설, → 독재 체제 구축에 이용(유신 + 주식제)
노태우 정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방 외교 → 유엔 동시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비핵화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1991,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상호 불가침, 교류와 협력 실시 시작
김대중 정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 관광 시작(해로)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확대),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의선 복구
노무현 정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 관광 확대(육로 관광 시작), 개성 공단 조성 •10·4 선언(2007,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백두산 관광, 서해 평화 지대 창설

[1. 해석이 빨라지는 빈출숙어 50]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ead to : 야기하다 , ~라는 결과를 낳다, ~에 이르다 2. result in : ~라는 결과를 낳다 3. result from / stem from : ~에서 기인하다, ~로부터 나온다 4. be likely to :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be unlikely to : ~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없다 5. have to do with : ~와 관계가 있다 6. contribute to :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7. tend to : ~하는 경향이 있다 8. come to V / get to V : ~하게 되다 9. fail to V : ~하지 못하다 / cannot fail to : 반드시 ~하다 10. play a role[part] (in) : ~에 역할을 하다 11. prevent, stop, keep A from B : A가 B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12. such as : ~와 같은 13. take step[action, measure] : 조치를 취하다 14. the effect of A on B : A가 B에 미치는 영향 15. based on : ~에 바탕을 두고 16. refer to : ~을 나타내다, ~을 가리키다 17. engage in : ~을 하다, ~에 참여하다 18.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파생되다 19. deal[cope] with : ~에 대처하다, ~을 다루다 20. no[nothing, little] more than : ~에 불과한. ~에 지나지 않는 21. other than : ~을 제외한, ~외에 = aside from, apart from, besides 22. in favor of : ~에 찬성하여, ~를 지지하여, ~에게 유리하게 23. rather than : ~라기 보다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 take place : 일어나다, 발생하다 25. not necessarily : 반드시, 꼭 ~한 것은 아니다 26. regardless [irrespective] of : ~에 관계없이 27. at the cost [expense] of : ~을 희생하여, ~의 대가를 치르고 cf) at all costs 무슨 수를 써서라도 28. in terms of : ~의 면에서, ~의 관점에서 29. as a means of : ~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30. be told : 듣다 31. contrary to : ~와 반대로 32. depending (up)on : ~에 따라 33. on one's own : 혼자서, 독립적으로 34. for one's sake : ~을 위해서 35. not to mention : ~는 말할 것도 없고 = let alone 36. serve as : ~로서의 역할을 하다 37. put into action[practice] : 실행하다 38. the last thing[person] : 절대로 ~하지 않을 것[사람] 39. take ~for granted : 당연하게 여기다 40. as opposed to : ~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41. account for : 설명하다 42. have bearing on : 관계가 있다 43. end up : 결국, 끝내는 ~하다 44. in the aftermath[wake] of : ~의 여파로, 45. not A any more than B-B가 아니듯 A도 아니다 46. be in the spot light 주목 받다 47. as well 역시 48.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9. in light of ~라는 견지에서 50. take advantage of 이용해먹다 (나쁘게) |
|---|--|

[2. 법원직 어법공식21]

공식 #1.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완료] /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 주절의 시제가 현재/현재완료/미래라면 → 과거완료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나올 수 있다!
- 과거 완료는 과거[완료]시제하고만 쓰일 수 있다.
- 시제 일치 예외: 불변의 진리 / 습관 → 무조건 현재
역사적 사실 → 무조건 과거
시간 & 조건(~라면)의 부사절에는 will이 못나온다!

(when과 if는 부사/명사/형용사절 구분필요)

공식 #.2 중요필수 / 주요제명(suggest)다음 종속절에 반드시 동사원형/단 suggest,insist는 “제안하다”와 “암시,시사하다”를 구분한다.

- 중필 형용사: Important (= of importance), essential, crucial, vital necessary, imperative
- 주장,요구,제안,명령 동사: insist, maintain, demand, ask, require, request, suggest, advise, recommend, propose, command, order, urge S insist that S +(should) 동원
- 단 insist, suggest가 사실전달을 뜻 (암시하다/시사하다) 일때는 시제와 수 일치! - 해석하면 “해야한다”가 어색함
The evidence suggested that the man had been killed in the room.

공식 #.3 가정법은 주절과 종속절 모양일치 / 도치 / 유사가정법 정리!

- 과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 과거완료: If you had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Had you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혼합: If they had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Had they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가정법미래: If I should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Should I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불가능한 가정법 미래: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Were I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유사 가정법은 종속절의 시간부사구를 보고 판단

I wish S 과거 (현재 이라면 좋을텐데)
 I wish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 (과거에 이랬으면 좋을텐데)
 S V as if S 과거. (현재에 마치 ~ 인 것처럼)
 S V as if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과거에 마치 ~ 였던 것처럼)

공식 #.4 수동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문제! 반드시 공식 외운다.

- 수동태는 무조건 수동태 불가: happen / occur / arise / exist / (dis)appear / consist of / result in / result from / belong to / suffer from / 5감 동사 / remain / seem/ appear / resemble / have / lack / cost / have / let
- 자 → 수동태 x (단 전치사 있으면 OK - 전치사 + by 연속 나와야 수동태 가능)
- 타 → 뒤에 N 있으면 → 능동 / 없으면 → 수동 (**단 4/5형식은 예외: give, offer, consider, call)

I wanted to get yelled at by her for the first time. (법원 17)
 We shared a quality book. A quality book was shared by us.
 I was given a candy by her. (받았다) He is considered (to be) a genius by us
 • 사역동사 /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목적보어가 ① 동사원형이면 → toV로 ② 그 외의 것이면→그대로 !
 She saw him get out of the room. → He was seen to get out of the room by her.
 She saw him getting out of the room. → He was seen getting out of the room by her.

공식 #.5 2형식/5형식 - 보어의 품사 판별

- 2형식: 감각(look)/판단(seem)/판명(prove)/변화(grow, go, fall, turn, get)/유지(remain) 동사다음엔 형용사 or 명사를 보여로! It became well. (x) → It became good.
- 5형식: 1) 사역(let, have, make)&지각(see*watch*notice*observe, hear, smell, taste, feel)+O.+동원/형/분/명 그 외 5형식 동사 (get/ask/allow/want/advise/force) + toV/형/분
 2) 목적보어의 형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로 (to) V, Ving vs. pp 구분
 She had him carry her bags. / She had her bags carried.
 She asked him to carry her bags. / She asked her bags (to be) carried by him.

공식 #. 6 4형식이 3형식 될 때, 전치사 정리

ask, demand (질문 요구) 직목 of 간목 / buy, do, get, make, cook --> 직목 for 간목
 나머지(give, offer, teach, serve, owe) 는 모두 직목 to 간목

공식#. 7 병렬 구조 주의할 요소들 (최다빈출)

- A가 더 좋아요: prefer A(N / Ving) to B (N/Ving) / prefer to A rather than (to) B / may as well A(동원) as B(동원) / would rather A (동원) than B(동원)
- 상관접속사 A 와 B 의 품사, 형태 (동명사, toV), 수 일치에 유의
- 나열 했을 때: A, B, and C -->문장 맨 앞으로가서 나열된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무엇인지 찬찬히 따져야 한다. : 밑줄 친 단어 앞이나 뒤에 and가 있으면 /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 toV 가 병렬일 경우 and 다음의 toV는 V만 있어도 어법상 문제 없다. toV and V (o)
- 비교할 때 두 대상이 똑같은지 확인해야함. 단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at of B. 복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ose of B.

공식 #.8 지문형 어법문제 특화된 수일치

- 1)상관접속사 주어
 both A and B →무조건 복수 / A as well as B or A, not B→ A가 주어 / 나머지는 모두 B가 주어 →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not simply/not just/not merely A but (also) B
 2) A of B 형태 1) A lot of / a number of / a great deal of 를 제외하고는 A가 주어 → A의 수에 동사 일치 3)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주어는 3인칭 단수이다.
- 4) 부분사 주어: A number of 복수명사 + 복수동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 단수동사
 Many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Many students are good.
 Many a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Many a student is good.
 부분사(all, most, some, half, 분수, % + of + the + N → 동사는 N의 에 따라 달라진다.
 All + 가산 명사(복수형) + 복수동사 / All + 불가산 명사(단수형) + 단수동사
 one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One of the men is a criminal.
 each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Each of them is different.
- 5) 주어에 수식이 붙은 경우 / 수식어를 제거하고 / 수식당한 명사에 동사의 수를 맞춘다.
N+ 전치사구 / to V / 분사구 / 삽입구 / 동격절 / 관계사절 + V
- 6)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 선행사와 수를 일치 시킨다.(선행사가 전치사구인 경우 해석)
- 7) 도치구문의 수일치는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에 맞춘다.
 There / here + 동사 + 주어. 부정어구 + 동사 + 주어. / 보어강조 도치 + 동사+ 주어

공식 #.9 manage+toV vs. mind+Ving , 목적어자리의 toV / Ving구별

To V: 미래지향/선택적: afford, hesitate, pretend, manage, want, wish, decide, expect, plan, offer, fail, intend, refuse, seem

Ving: 과거지향/회피적/진행: mind, avoid, deny, quit, enjoy, consider, suggest, recommend, give up, keep, postpone

둘다 가능 1) 뜻차이 없이: 시작, 끝, 선호여부: start, like, hate 2) 시제 차이: remember, forget

3) 뜻차이 있음: regret, stop, try, mean

Regret to - 유감 vs. regret Ving- 후회 / stop toV-하기 위해 멈추다 vs. stop Ving-하기를 중단하다

그 외 ving 구문: have difficulty Ving / spend o Ving/ end up Ving / it's no use Ving

공식 #. 10 look forward to + Ving! 전치사 to를 구분한다.

look forward to Ving / be used(accustomed) to Ving / contribute to Ving / Object to Ving / be opposed to Ving / Devote oneself to Ving=be devoted to Ving / With a view to Ving /When it comes to Ving / Be equal to Ving / Be exposed to Ving / contribute to Ving / come close to Ving / be subject to Ving

공식 #. 11 분사의 형태 = 수동태공식

1) 명사 앞 자리: 능동이면 현재분사 / 수동이면 과거분사 (확률적으로 과거분사 가능성이 높음)

2) 명사 뒤 자리: 자/타 동사 구분과 전치사 유무로 쉽게 구분됨 (수동태 공식과 동일)

★ 뒤에 N → Ving (예외: 수여/call/name/consider)

★ 뒤에 전명구 → pp (예외: 자동사 but 섬에 잘 안나옴)

He saw a student greeting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punished by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coming to a teacher. 자 He saw a student given a prize by a teacher. 수여

He saw a student called Mr. Know All by friends. 5형식

3)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자동사 (e.g., happen)은 pp형태도 될 수 없다 → 분사로 쓸 것이라면, 언제나 Ving !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road (x) --> the accident occurring on the road (o)

공식 #.12 감정동사는 타동사 / 감정의 원인이 Ving / 감정을 느낀자는 pp

My father was disappointed with I did. My behavior was disappointing.

perplex / bewilder / puzzle / confuse / bore / tire/ satisfy / disappoint / surprise / shock

공식 #.13 분사자리 vs. 동사자리 결정은 V-1 = 접속사 공식으로!

• S+분사+ V ~ : The boy **insisting**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 S+관계사+V+ V~: The boy who **insisted**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V와 분사 구별 후 → 능동/수동 구분 → 시제구분

• 분사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절과 주어가 같지 않아서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음

1) 분사, S + V.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2) 부사절접속사 + **분사**, S + V. →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 (어쨌든 주어없으면 V안됨)
While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3) 부사절접속사 +S+V, S +V→ 주어가 있어야 동사가 나올 수 있다.

While he **was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4) S1 **분사**, S2 + V → 접속사가 없으면 S V 가 나올 수 없다. (독립분사구문 S1과 S2가 다름)

He **insisting** on his staying, **she**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수동능동 / 시제 구별 해야함]

• 등위접속사 (and/but/or) 앞이나 뒤엔 동사가 와야 함.

S V and (S) V. vs. S V , 분사

단, S V ~ Ving(분사) and Ving(분사) - 병렬구조

• Having pp, S V. → 능동임을 반드시 기억한다. (완료분사, 시제만 주절보다 앞설뿐!)

(Having been) pp, S V. → 수동이다.

• With +명사+분사: 명사가 분사 하면서 / 명사가 분사하기에 : With +명사+(being)+형 or 전명구 도 가능!

With the spring coming, it's time to go shopping.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전명구)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eyes open. (형)

공식 #. 14 접속사는 완전/불완전 절 / 쓰일 수 있는 위치 / 접속사로 착각하는 전치사

• what/ which / who 다음은 불완전 문장 / 나머지는 완전한 문장

• 의문사 + S + V 어순 (의문사 V S 틀림) He will ask you how old are you. (x)

• 전치사 + that S V (x) / 나머지는 가능

• What vs. that 구별: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vs.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문장: 주어/목적어/보어/전목 중 하나가 없는 것: 이때 실수 하지 않도록 전치사구.부사앞에 반드시 끊기

• whether는 다 되고, if는 동사 다음자리에 if S V 로만 올 수 있다. I wonder if he will pass. (o)

• Because / since vs. Because of / due to / owing to / thanks to/ on account of

While vs. During / for
 Although vs. In spite of / despite
 by the time vs. by

공식 #. 15 관대불완 vs. 관부완전=전관대완전 / that 앞에 컴마못와 / however 형부주동

-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1) 동사는 있고 2)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 whose는 뒷문장에 관사 없는 주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불완전! vs. of which 는 관사까지 나와서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이 나옴! 또한 whose는 사람 사물 선행사 모두 가능
- What 관대 앞에는 선행사 못온다. *I couldn't get it what he told me. (x)*
- that은 전치사 다음에 못 오고 / 컴마 다음에 나올 수 없다. --> 전치사+which or whom / , who or which (o)
- 관계부사 where 다음엔 완전한 문장 / 관계부사 = 전치사+관대 이므로 where = in which
- However 형/부/형명 S V, S V.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 (형: 보어없음 / 부: 완전절 / 형명 - 주어 나 목적어없음)

공식 #. 16 명사의 수,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추론으로 풀 수 없다.

-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knowledge evidence proof advice news // stationery jewelry poetry machinery pottery scenery // furniture equipment clothing weather traffic baggage luggage money homework
- 학과, 질병, 게임, 국가 - 단수 Physics / Diabetes / Billiards / The United States is ~ . (o)
- 상호복수: be on good terms with / make friends with / shake hands with / take turns Ving (o)
- 한단단: 한정적 용법의 단위는 단수다
 three hundreds soldiers(x) --> three **hundred** soldiers (o) **hundreds of** soldiers (o)
 a ten-dollars bill (x) --> a ten-**dollar** bill (o)
 the twenty-feet-high buildings (x) --> the twenty-**foot**-high buildings (o)
- many / a number of / not a few / quite a few / few (fewer) + 무조건 복수형 명사
- much / a great amount*deal*quantity of / not a little / quite a little / little (less) + 무조건 단수형 명사 (셀 수 있는지 여부는 명사 뒤에 "s" 있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공식 #.17 2개 열거설명: one + the other / 3개 열거설명 one, another, the other!

- 복수이면 ~s / 치칭마지막 것이면 the+ / another는 무조건 단수
- Another / other는 한정사와 대명사 둘 다 가능 others는 대명사로만 쓰인다
 others students (x) --> other students (o) or others (o)
- 관용표현 - each other: 둘 사이의 서로서로 / one another: 셋 이상의 서로서로
 - one after the other: 2 차례로 / one after another: 3 차례로
 -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식 #.18 a붙은 형용사는 보어자리에만 올 수 있다.

- 한정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만 / 서술형용사는 보어자리에 올 수 있다.
 서술형용사 (a 로 시작함): alive / asleep / alike / afraid / alone / ashamed / awake / aware /
 한정형용사: elder
 The asleep baby is my nephew. (x) --> The sleeping baby is my nephew. (o)
 He was an alone member. → He was a lone member. (o) He let me alone. (o)
 He is elder than me. (X) → He is older than me. (o) He is my elder brother. (o)

공식 #. 19 비교구문: 품사확인 / 병렬구조 확인

-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 와야 한다. This is as heavier as that. (x)
- 배수사/분수가 as - as 앞 / 비교급 앞 에 올 수 있다. This is three times as heavy as that.
- 라틴어 비교급 (-or) 은 than (x) → to (o) superior to (o)
- The 비교급 S (V) , the 비교급 S (V). 항상 이구조로 쓰여야 한다. (형/부/형명 품사 판별도 나올 수 있음)
- 비교급 강조는 FAMES very는 원급강조
-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the가 붙고 / 부사는 안붙는다.
- 비교하는 두 대상은 내용 및 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
- 최상급 of 복수명사 / in 단수명사 =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공식 #. 20 도치가 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둔다.

- 부정부사(구/절) 문두: 단, 부정부사절 일 경우, 주절이 도치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not only, little, only / 전치사+no+명사 , only+전치사구 / not+접속사)
- There V S. (단 주어가 대명사이면 도치 하지 않는다) There is a teacher. / There she is.
- 가정법 조건절 if 생략하면 도치 Were I a bird, I would fly to you.
- 보어 강조 → 형/분 + be + S (So) serious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 장소 전치사 + 명사 + V + S On the hill stands the man wearing a hat. (이때는 do동사 만남)
- So / neither/ nor +V + S : S도 역시 V 하다/안하다 He lives in Seoul, and so do his parents.
- As +V +S → S도 V 하듯이 Jane goes to church, as do her parents. (해석해야함)
- 형부분명 as S V (도치 아님/형부분명만 앞으로나감) = (A)though S V 형부분명
- 이때, 형부의 품사 판별도 출제 가능

공식 #. 21 대동사: do / 조동사/ be 동사 셋 중에 무엇이 맞는지 - 앞 절에서 확인

- I am happy, and so is he. I can do it, and so can h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nor has my wif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and neither has my wife.
- I studied as hard as he did.

[3. 독해가 빨라지는 흐름읽기 팁]

1. “역접 뒤가 핵심” 규칙은 갯진리 - 주제가 맨 앞 / 주제가 역접 뒤 / 주제가 마지막 / 주제가 샌드위치 구성 중 하나인데,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잘 나온다. / 주제가 잘 파악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 문장을 보자!- 일화나 사건으로 시작한다면 더욱 그렇다. 미괄식 구성이다.

2. 주제는 통념을 거스르는 것이다. -당연한 것, 뻔한 것에 낚이지 않는다 --> 지문은 새로운 정보와 참신한 내용은 알려주려는 목적 //

: 옛날엔 그랬지... /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지 / 이렇게 보이긴 하지.. 는 주제가 아니다 / 뒤가 주제

- at first / in the past / previously / prior to 언제 → 핵심이 아니다 : 이때와 다른 오늘의 양상이 핵심이다.

- might / may / seem / sound/ some 이 들어간 논리는 뒤에 역접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핵심은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속독해야함.

3. 필자의 강력한 언어단서는 속독 중에도 반드시 읽는다.

- 최상급 문장 / interestingly, surprisingly, unfortunately / paradoxical/ironic/contradictory/puzzling/perplexing 등의 “역설적”이다-라는 뜻의 단어는 A임에도 불구하고 B이다-라는 대조의 상황이 반드시 뒤에 specific하게 연출된다.

finally / eventually / at last / end up Ving는 논리의 귀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 / 속담이나 격언

- 이게 주제 이거나, 이걸 틀렸다고 꼬집거나 / ignore / neglect / underestimate / resist / reject / suspicion / criticism / doubt / skepticism / question의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정답의 포인트이다.

형 법

박지용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중요 최신판례 15개 꼭 체크하자

[판례 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23. 7. 17. 2021도11126 전합

[판례 2]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적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적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략)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대판 2023. 7. 17. 2017도1807 전합

[판례 3]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갑(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갑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갑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갑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1]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2]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 9. 21. 2018도13877 전합

[판례 4]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2. 12. 22. 2016도21314 전합).

[판례 5]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이 사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대판 2023. 12. 14. 2023도10313

[판례 6]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화제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판 2023. 12. 14. 2020도1669

[판례 7]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갑 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을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갑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 을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위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을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을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판례 8]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 대법원 2022.1.14. 2021도14015

[판례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판 2023. 8. 31. 2023도6355

[판례 11]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2022. 10. 27. 2022도10402).

[판례 12]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갑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 2022도4719

[판례 13]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취지로 도서를 편찬한 사건

[1]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2]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대판 2023. 10. 26. 2017도18697

[판례 14] 무자격자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공소의 1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체한 다음, 의료인인 공소의 1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023. 3. 16. 2021도16482

[판례 15]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갑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쥐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3. 3. 30. 2019도7446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2023년~2024년 선고된 형사소송법 관련 최신중요판례 모음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판 2023.7.17.,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O , X)

2.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지만,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2.13., 2022도1872)

.....(O , X)

3.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판 2023.7.13, 2021도10763)

.....(O , X)

4.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않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서도 고소 및 고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대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7.17.,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O , X)

5.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24.1.11., 2020도1538)

.....(O , X)

6.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여기에서의 ‘청취’에 포함된다. (대판 2024.2.29., 2023도8603)

.....(O , X)

7.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도 위 사진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4.27., 2018도8161)

.....(O , X)

8.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O , X)

9.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대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며,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판 2023.9.18., 2022도7453)

.....(O , X)

10.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

물적·사후적 판단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3.12.14., 2020도1669)

.....(O , X)

11.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판 2023.6.1., 2018도19782)

.....(O , X)

1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포함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6.1., 2018도18866)

.....(O , X)

13.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23.6.1., 2018도18866)

.....(O , X)

14.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 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2023.10.18., 2023도8752)

.....(O , X)

15.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는 그 임의성으로 인하여 달리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1.5., 2021도385)

.....(O , X)

16.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그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6.1., 2020도2550)

.....(O , X)

17. 압수물에 대한 물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 2024.3.12., 2022도2352)

.....(O , X)

18.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24.3.12., 2020도9431)

.....(O , X)

19.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판 2023.7.13., 2019도7891)

.....(O , X)

20.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함이 없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대판 2023.4.27., 2023도2102)

.....(O , X)

2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2023.8.31., 2021도17151)

.....(O , X)

22.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의제공소시효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해설 :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의제공소시효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대판 2022.9.29., 2020도13547), 2024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의제공소시효도 그 진행이 정지된다(제253조 제4항).

기존판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대판 2022.9.29., 2020도13547).

신설된 제253조에 제4항 :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23.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는데,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대판 2023.6.15., 2023도3038)

.....(O , X)

24.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대판 2024.3.12., 2023도11371)

.....(O , X)

25.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판 2024.1.4., 2023도13081)

.....(O , X)

26.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23.6.15., 2023도3038)

.....(O , X)

27.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23.12.28., 2020도6417)

.....(O , X)

28.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전파가능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24.1.4., 2022도14571)

.....(O , X)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24.1.4., 2023도2836)

.....(O , X)

3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대판 2023.6.1., 2023도3741)

.....(O , X)

3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항범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대판 2023.6.1., 2023도3741)

.....(O , X)

32.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대판 2024.1.4., 2023도13081)

.....(O , X)

33.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2023.10.26., 2023도7301)

.....(O , X)

34.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소송절차는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다. (대판 2023.6.15., 2023도3038)

.....(O , X)

35.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면소판결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만,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판 2023.2.23., 2022도4610)

.....(O , X)

36.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판 2023.6.29., 2020도3705)

.....(O , X)

37.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4.27., 2023도350)

.....(O , X)

38.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판 2023.12.28., 2023도10718)

.....(O , X)

39.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사가 아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대판 2023.4.21., 2022도16568)

.....(O , X)

40.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룰 수 있다. (대법원 2024.3.12., 2022도2352)

.....(O , X)

4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대법원 2024.3.12., 2022도2352)

.....(O , X)

42.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준항고는 배척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1.12., 2022도1566)

.....(O , X)

4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 2023.7.14., 2023모1121)

.....(O , X)

44.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유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대판 2023.11.30., 2023도10699)

.....(O , X)

45.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대법원 2024.3.13., 2024모398)

.....(O , X)

4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24.05.23., 2021도6357)

.....(O , X)

민 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2023년 ~ 2024년 선고된 민법 관련 최신중요판례 모음

민법총칙 관련 2023년, 2024년 최신판례

1. 제13조 뒤 - 가정법원이 한정후건을 개시하며 피한정후건인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건인의 동의를 받도록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건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건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우, 위 제한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23.9.27., 2020다301308)

.....(O , X)

2. 제38조 뒤 -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판 2023.4.27., 2023두30833)

.....(O , X)

3. 제57조 뒤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나,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대판 2024.1.4., 2023다263537)

.....(O , X)

4. 제96조 뒤 - 중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중증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중증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중증의 실제 자체도 부인된다. (대판 2023.12.28., 2023다278829)

.....(O , X)

5. 제96조 뒤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대판 2023.11.2., 2023다259316)

.....(O , X)

6. 제104조 뒤 - 공박 때문에 불공정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이익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도 그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다. (대판 2024.3.12., 2023다301712)

.....(O , X)

7. 제104조 뒤 - '공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급박한 곤궁 상태를 자초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4조의 공박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24.3.12., 2023다301712)

.....(O , X)

8. 제104조 뒤 -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대판 2023.2.23., 2022다287383)

.....(O , X)

9. 제114조 뒤 -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 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

- 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된다. (대판 2024.1.4., 2023다225580)
(O , X)
10. 제114조 뒤 -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대판 2024.1.4., 2023다225580)
(O , X)
11. 제114조 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대판 2024.1.4., 2023다225580)
(O , X)
12. 제124조 뒤 -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이 제한되는 쌍방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쌍방대리행위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24.1.4., 2023다225580)
(O , X)
13. 제153조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대판 2023.4.13., 2021다305338)
(O , X)
14. 제165조 뒤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O , X)
15. 제165조 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대판 2023.11.16., 2022다231403)
(O , X)
16. 제165조 뒤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대판 2023.5.18., 2022다305861)
(O , X)
17. 제165조 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판 2023.12.14., 2023다248903)
(O , X)
18. 제166조 뒤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23.2.2., 2022다276307)
(O , X)
19. 제166조 뒤 -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라도 그 시점 이후에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23.12.21., 2018다303653)
(O , X)
20. 제166조 뒤 -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이다. (대판 2023.2.2., 2022다276307)
(O , X)
21. 제171조 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11.9., 2023마6582)
(O , X)
22. 제176조 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대판 2023.12.14., 2022다210093)
(O , X)

23. 제184조 뒤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23.12.21., 2018다303653)
.....(Q , X)

물권법 관련 2023년, 2024년 최신판례

1. 제185조 뒤 -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도 있다. (대판 2023.4.27., 2022다273018)
.....(O , X)

2. 제204조 뒤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23.8.18., 2022다269675)
.....(O , X)

3. 제215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점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입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판 2023.10.18., 2019다266386)
.....(Q , X)

4. 제215조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권리행사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24.3.12., 2023다240879)
.....(O , X)

5. 제215조 -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 (대판 2023.12.7., 2023다246600)
.....(O , X)

6. 제21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대판 2023.7.27., 2020다263857)
.....(O , X)

7. 제237조 -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소유자의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요구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소송으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23.4.13., 2021다271725)
.....(O , X)

8. 제245조 뒤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대판 2023.6.15., 2022다303766)
.....(Q , X)

9. 제246조 뒤 -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다. (대판 2023.10.26., 2023다215590)
.....(Q , X)

10. 제256조 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은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는 수목을 식재한 자이다. (대판 2023.11.16., 2023도11885)
.....(Q , X)

11. 제261조 -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23.4.27., 2022다304189)
.....(Q , X)

12. 제265조 뒤 -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 그 보존권 행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대판 2024.3.12., 2023다240879)
.....(Q , X)

13. 제265조 뒤 -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23.12.7., 2023다273206)
(O , X)
14. 제283조 -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4.27., 2022다306642)
(O , X)
15. 제324조 뒤 -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는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2023.8.31., 2019다295278)
(O , X)
16. 제348조 -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 (대판 2023.1.12., 2020다296840)
(O , X)
17. 제367조 뒤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23.7.13., 2022다265093)
(O , X)
18. 제369조 뒤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라도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23.7.27., 2023다228107)
(O , X)

채권총론 관련 2023년, 2024년 최신판례

1. 제379조 뒤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대판 2024.1.25., 2022다229615)
(O , X)
2. 제38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이다. (대판 2023.2.2., 2022다260586)
(O , X)
3. 제387조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판 2023.6.29., 2023다218353)
(O , X)
4. 제393조 - 타인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토지의 임료상당액이지만,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임료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23.3.13., 2022다293999)
(O , X)
5. 제395조 뒤 -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24.2.15., 2019다238640)
(O , X)
6. 제396조 뒤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는 법원이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대판 2023.11.30., 2019다224238)
(O , X)

7. 제398조 뒤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대판 2023.8.18., 2022다227619)

.....(,)

8. 제405조 뒤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24.3.12., 2023다301682)

.....(,)

9. 제406조 -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23.3.16., 2022다272046)

.....(,)

10. 제406조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판 2023.10.18., 2023다237804)

.....(,)

11. 제406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판 2023.9.21., 2023다234553)

.....(,)

12. 제406조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판 2023.6.29., 2022다244928)

.....(,)

13. 제406조 -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판 2024.2.15., 2019다238640)

.....(,)

14. 제40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3.4.13., 2021다309231)

.....(,)

15. 제409조 -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그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친다. (대판 2023.3.30., 2021다264253)

.....(,)

16. 제427조 뒤 -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범죄자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자책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범죄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판 2023.3.9., 2022다228704)

.....(,)

17. 제427조 뒤 -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판 2023.12.7., 2020다225138)

.....(,)

18. 제427조 뒤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 (대판

2024.3.12., 2019다223303)

.....(O , X)

19. 제427조 뒤 -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판 2023.6.29., 2022다309474)

.....(O , X)

20. 제427조 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대판 2023.6.29., 2022다309474)

.....(O , X)

21. 제427조 뒤 - 구조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범죄자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음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이다. (대판 2023.3.9., 2022다228704)

.....(O , X)

22. 제443조 -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23.2.2., 2020다283578)

.....(O , X)

23. 제449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2023.4.13., 2022다293272)

.....(O , X)

24. 제459조 -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판 2023.3.30., 2022다296165)

.....(O , X)

25. 제466조 -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이다. (대판 2023.2.2., 2022다276789)

.....(O , X)

26. 제468조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판 2023.4.13., 2021다305338)

.....(O , X)

27. 제473조 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인 공증료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3.6.15., 2022다211959)

.....(O , X)

28. 제477조 -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 (대판 2023.4.13., 2022다309337)

.....(O , X)

29. 제479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대판 2024.3.12., 2019다29013)

.....(O , X)

30. 제482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24.3.12., 2021다262189)

.....(O , X)

채권각론 관련 2023년, 2024년 최신판례

1. 제527조 뒤 -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판 2023.6.29., 2020다248384)

.....(O , X)

2. 제56조 뒤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4.2.29., 2023다289720)

.....(O , X)

3. 제549조 뒤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판 2024.2.29., 2023다289720)

.....(O , X)

4. 제562조 뒤 -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23.9.27., 2022다302237)

.....(O , X)

5. 제563조 뒤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대판 2023.9.14., 2023다227500)

.....(O , X)

6. 제565조 뒤 -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24.1.4., 2022다256624)

.....(O , X)

7. 제629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2023.3.30., 2022다296165)

.....(O , X)

8. 제651조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며, 이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대판 2023.6.1., 2023다209045)

.....(O , X)

9. 제653조 뒤 -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중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중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대판 2023.11.2., 2023다249661)

.....(O , X)

10. 제653조 뒤 -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판 2023.11.2., 2023다244895)

.....(O , X)

11. 제65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 등 임원도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에 포함된다. (대판 2023.12.14., 2023다226866)

.....(O , X)

12. 제654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대판 2024.1.11., 2023다258672)

.....(O , X)

13. 제654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써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대판 2023.12.7., 2022다279795)

.....(O , X)

14. 제65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다. (대판 2023.2.2., 2022다260586)

.....(O , X)

15. 제654조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판 2023.11.9., 2023다257600)

.....(O , X)

16. 제665조 뒤 -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23.3.30., 2022다289174)

.....(O , X)

17. 제668조 뒤 -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23.10.12., 2020다210860)

.....(O , X)

18. 제688조 뒤 -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지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에 대하여 더 이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2024.2.29., 2023다294470)

.....(O , X)

19. 제702조 뒤 -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판 2023.6.29., 2023다218353)

.....(O , X)

20. 제741조 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24.2.15., 2023다272883)

.....(O , X)

21. 제741조 뒤 -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나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23.6.29., 2021다243812)

.....(O , X)

22. 제742조 뒤 -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대판 2024.2.15., 2023다272883)

.....(O , X)

23. 제750조 뒤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대판 2023.11.16., 2022다265994)

-(○ , X)
24. 제750조 뒤 - 비록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2023.12.21., 2023다265731)
-(○ , X)
25. 제758조 뒤 -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대판 2024.2.15., 2019다208724)
-(○ , X)
26. 제763조 뒤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2023.1.12., 2021다201184)
-(○ , X)
27. 제763조 뒤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고도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 , X)
28. 제763조 뒤 -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판 2023.3.9., 2020다218925)
-(○ , X)
29. 제763조 뒤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으나, 만일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대판 2023.8.31., 2022다219427)
-(○ , X)
30. 제763조 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다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2023.5.18., 2022다230677)
-(○ , X)
31. 제765조 뒤 -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판 2024.2.15., 2019다208724)
-(○ , X)
32. 제766조 뒤 -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된다. (대판 2023.1.12., 2021다201184)
-(○ , X)

친족상속법 관련 2023년, 2024년 최신판례

1. 제826조 뒤 -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도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2023.3.24., 2022스771)
-(○ , X)
2. 제839조의3 뒤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다. (대법원 2024.1.4., 2022브11027)
-(○ , X)
3. 제839조의3 뒤 -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

- 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그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3.12.21., 2023므11819)
(O , X)
4. 제860조 뒤 -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3.10.31., 2023스643)
(O , X)
5. 제864조 뒤 -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의 기산점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다. (대법원 2024.2.8., 2021므13279)
(O , X)
6. 제865조 뒤 - 과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3.9.21., 2021므13354)
(O , X)
7. 제1004조 뒤 - 상속결격사유로서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2023.12.21., 2023다265731)
(O , X)
8. 제1008조의3 뒤 - 제사주제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제자가 된다. (대판 2023.5.11., 2018다248626)
(O , X)
9. 제1013조 뒤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른바 주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된다. (대판 2023.12.21., 2023다221144)
(O , X)
10. 제1013조 뒤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도 상속재산이 된다. (대판 2023.11.16., 2018다283049)
(O , X)
11. 제1043조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며,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23.03.23., 2020그42)
(O , X)
12. 제1067조 뒤 -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판 2023.6.1., 2023다217534)
(O , X)
13. 제1112조 뒤 - 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결 2024.4.25. 2020헌가4)
(O , X)
14. 제1113조 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23.5.18., 2019다222867)
(O , X)
15. 제1118조 뒤 -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결 2024.4.25. 2020헌가4)
(O , X)

민사소송법

이영민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2. 제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제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4.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5.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6.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8.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9.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11.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12.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13.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14.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제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15.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6.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7.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

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1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실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20.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21.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2. 비법인 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3.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4.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5.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6.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7. 소장에 채용한 부족인지의 가침에 관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부족인지액의 가침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본법 제446조에 따른 재판의 경정을 할 수 없다.
28.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30.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1.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34.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5.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6.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7.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38.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9. 별도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0. 중복제소금지 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
41.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2.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43.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44.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5. 원고가 상환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6.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용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47.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8.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9.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나 권원 등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 즉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50. 토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의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52.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3.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4조 및 제179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4.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55. 항소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56.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57.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8.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59.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60.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1.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62.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63.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4.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65.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툼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66.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67.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68.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69.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중국판결이 있는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70.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중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71.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2.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73.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74.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498조),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75.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6.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77.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8.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79.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80.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81.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중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82.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3.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84.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 청구는 ...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85.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청구변경의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보호는 보장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취

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86.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87.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88.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89.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90.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9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2.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93.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94.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95. 소송 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96.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97.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98.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99.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의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100.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101.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102.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 민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통상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04.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인정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5. 소송계속중에 소송목적의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써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6.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07.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08.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109.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110.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11.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112.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113.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14.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5.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16.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17.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118.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19.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들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20.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121.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2.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23.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24.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상 법

이상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수험생 여러분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분히 공부하였고, 시험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공부가 되어진 내용이겠지만, 짚을 내는 시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보고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1.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4.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5.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 6.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 7. 상법 제42조 제1항에 있어서 영업양도 당사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은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8.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9.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10.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11.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2.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13.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14.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 15.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업무 또는 검사·확인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6.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17.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채무면탈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8.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

건으로 한다.

19.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2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자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2.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2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4.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5.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26.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27.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입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9.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0.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31.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2.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3.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35.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6.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고, 이사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7.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8.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봄이 상당하다.
40.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42.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44.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5.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46.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범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47.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48.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49.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다.
50.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전세권변경, 근저당권변경 등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따른 등기실행방법]

- ① 원칙 : **부기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
- ② 예외 : **수리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라도 수리x)
(예외가 되기 위한 질문의 단어 : “터잡은, ~목적, ~에, ~부”).

2. [등기대상]

- ① 가능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10년이상 규정 : 예시적에 불과), 벽이 없는 개방형축사, 실내테니스장**
- ② 불가능 : **연결통로, 하천(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벽이 없는 버섯재배사, 해수면 위~**

- 등기관은 직무권한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지만,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며, 등기소장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종료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받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㉔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재단법인 주무관청허가서 / 공익법인 소유권이전 주무관청허가서**)
-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가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로 접수하나,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되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상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국**’ ‘**관리청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 등기당사자능력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일 필요는 없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계속적/일시적)체류국 **재외공관o / 거주국 공증인x**]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재외공관의 공증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1.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국내 공증인x)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취할수도 있다.
2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 그 증명이나 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23.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미국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 그 인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2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5.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6.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27.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서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정관 기타 규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28.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 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2인 이상의 성년자는 반드시 결의서 작성 당시에 날인한 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3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표시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채무자로 되는 경우 등기기록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1.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등기상의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관계없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2.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33.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 전에 그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그 말소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 원인이 합병 등기 후에 발생하였으면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5.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와달리,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7.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채권이나 금전채권이나 모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8.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㉔ 번호x).
39. 등기관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㉕ 상대방대리),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㉕ 쌍방대리). 다만,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40.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1.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2. 등기관이 2006. 1. 1. 후(전x)에 작성된 매대계약서(판결서x)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x)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43. 중증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중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44. 농지에 대하여 매대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5. 합유자의 교체·추가·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6.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상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가 또다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 경우에도 신탁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이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7. 토지거래계약하기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하기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48.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49.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5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다.
51. 승소한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53.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전건)와 매수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전건과 후건이 이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건의 접수증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다.
54. 근저당권이전등기(또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다른 방법(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6.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 다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㉞ 이 경우에는 선행하여 주소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불일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57.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8.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59. 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이 하단에 본인 소유의 필체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0.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61.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관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2. 등기관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63.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의 원본 환부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계약서**(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② **수용**(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③ **판결**(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규약 또는 공정증서)
 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6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6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㉔ 공유인 뜻×, 합유지분×).
66.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6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68.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69.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
7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71. **각하사유를 간과하여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하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2.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창설적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3.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추가적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두 토지가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있는 경우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74.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도로명주소×)**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이 있다.
75.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76. **부채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이기**되고 그 등기사항이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전산등기부**에 이기된 사항을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77. **권리자체의 경정(저당권 → 전세권), 권리자 전체의 경정(甲 → 乙), 법인을 비법인으로 하는 경정,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8.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79.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㉔ 수리요건).
80.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81. **甲 - 乙 -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현재의 소유명의인 **丙**은 그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82.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병**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명의인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갑이 **병의 승낙**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8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하여 판별한다.
8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주택

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말소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위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85. 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86.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말소당시의소유자(중전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현재의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
87.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88.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권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개방형 측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측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권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측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권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1.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92.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3.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㉔ 소유권이전x).
94.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95.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㉕ 접수증명x)을 제출하여야 한다.
96. (㉖ 현물분할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없이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막바로 할 수 있다.
97.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①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지만, ②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98.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이 가능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99.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100. 협의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재협의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 재협의분할, 재협의를 성립한 날)와 새로운 상속등기(단독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하여야 한다.
101. 그러나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중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02.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려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병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정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자는 을의 원래의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병이라 할 것이다.
10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104.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a')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a')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결국 A의 상속인(a')은 X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B,C)'과 '상속포기자(a)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a',a'')(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혹은 'A의 후순위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이라 할 것이다.

105.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6.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107.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 을, 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108.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10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2. 그러나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113.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
114.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을, 병)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을, 병, 정, 유증자 망 갑의 유언집행자 을, 병”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115.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 또는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6. 갑이 을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병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을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7.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8. 유언증서에 “본인의 유고 시 자산은 ○○○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라고만 기재하고 별도로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

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0.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21.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
122.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결정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2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24.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25. ○○시장이 비록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서에 사업시행자가 “○○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도”로 할 수는 없으며, “○○시”로 하여야 한다.
126.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로 기재되어 있는 재결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 등기원인일은 ‘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127.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 등을 ‘수용’하였음이 주문에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재결서 주문에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한 후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12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129.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30.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31.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32. 「도시철도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1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34.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135.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6.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7.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138.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괄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역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139.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140. 지역권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승역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액은 요역지의 시가표준액이 된다. 또한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41.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
142.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43.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44.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145.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14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147.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각 부동산별·채권자별·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148.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49.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할 수는 없다.
150. 원칙적으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면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51.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15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3.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다.
154.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서등을 첨부하여도 공장저당권을 할 수 없다.
155. 공장저당의 설정등기를 한 후에 기계·기구의 추가나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56.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7. 2012. 11. 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가등기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2023. 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1. 15.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3. 11. 15.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23. 7.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

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158.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으로 가등기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말소도 통상의 말소절차(㉔ 등기신청)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159.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60.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x).
16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 ②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162. **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여부를 결정하며,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163.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전세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
164.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㉔ 모든)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165.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6.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 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o
 - ②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 o
 - ③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x**
 - ④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 : x**
167.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 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o
 - ②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 o
 - ③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o**
 - ④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o**
168.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169.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취득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0.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에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71.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으로 인한 권리에전등기를 한 다음 등기목적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재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172. **공동위탁자(甲, 乙) 중 1인(乙)을 단독수탁자, 甲과 乙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甲지분에 대하여는 “甲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乙지분에 대하여는 “乙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73.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174.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

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5.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x)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관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76.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177.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목적란부터 횡선을 그어 "등기목적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78.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179.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㉔)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80.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181.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희생·파산법상의 보전처분의 등기를 할 수 있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가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신청) 할 수 있다.
182.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83. 희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다른 희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84.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희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희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85. 환지계획인가의 고시(환지처분공고)이 있는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으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만약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86. 이전고시가 있는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는데, 만약 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87. 근저당권이 새로운 건물과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및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므로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는다(자등기x).
188.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직권x)로 하여야 하므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89.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상의 등기명의인과 첨부정보인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첨부정보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91. 위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5년대비 법원(등기)사무직 시험대비

합격 설명회

25년 공무원 대비

박문각 합격전략 설명회

법원,
등기직



법원, 등기직 이준현

6.29(토) 14시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 캠퍼스

- ▶ 설명회 일자 : 2024년 6월 29일(토) 14시
- ▶ 설명회 내용 : 1) 채용팀 연간 커리큘럼 및 과목별 학습 방향
2) 법원·등기 단기합격 노하우
- ▶ 설명회 장소 : 박문각 이데아관 3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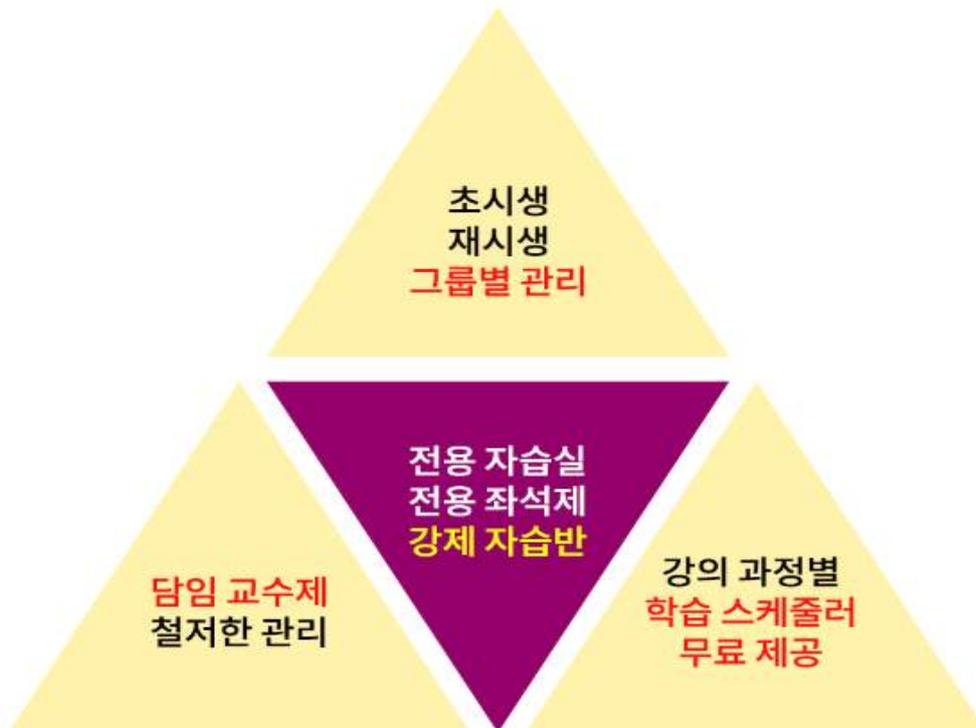
2025년 법원·등기직 대비 이준현 채용팀 연간 커리큘럼

2024년		2025년		
7~9월	10~12월	1~2월	3~4월	5~6월
기본이론	심화이론	Final 기술문제풀이	Final 핵심이론요약	Final 전 범위 모의고사 +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시생이나 재시생 중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들 대상 체계와 기본이론을 탄탄히 다지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판례 및 자주 출제되는 빈출 판례들을 중심으로 주요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배부된 진도 계획표를 통하여 수업 전 예습 + 문제풀이 수업 + 틀린 문제 복습으로 3회독 효과를 지향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모의고사로 부족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론요약 수업을 통해 집중 보완함으로써 고득점을 완성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범위 실전 모의고사 실시로 마지막 실력 점검 및 실전 대비 훈련 과정 중요 지문 분석 및 특강을 통해 과목별 부족한 부분을 최종 정리

실력점검 월별 모의고사 시행

체계적인 12개월 연간 커리큘럼으로 초심자도 고득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박문각 이준현 채용팀만의 '3M 관리반' 프로그램



법원·등기직 연간반 엘리버드 수강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4.5.20(월) ~ 2024.6.30(일)

차원이 다른 탄탄한 합격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수험에 꼭 필요한 필수 혜택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내 수강신청 시 혜택 전원 제공!

12개월 연간반 수강신청하기

12개월 8과목 법원직 연간반	5,400,000원 3,024,000원 30% +20%	수강신청 >
<small>* 6월 30일까지 추가할인. 7월 1일부터 할인율 변경 예정!</small>		
12개월 8과목 등기직 연간반	5,400,000원 3,024,000원 30% +20%	수강신청 >
<small>* 6월 30일까지 추가할인. 7월 1일부터 할인율 변경 예정!</small>		